

# 인도네시아 광업 투자 및 법령 가이드



*Korean Translation  
supported by*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original PwC Indonesia publication, 8<sup>th</sup> edition of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is supported by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While every care has been taken in translating the original publication, no guarantee is given as to the correctness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and no liability is accepted for any statement or opinion, or for any error or omission in it. In specific circumstances, professional advice should be sought. In the event where the wording creates confusion, the reader should refer to the original publication.

동 책자는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 책자는 PwC Indonesia의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8판)의 국문 번역본으로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동 책자의 번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이견이나 오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또한, 내용 및 해석에 대한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문 원본 책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Contents

## Foreword

1

광산업 규제 체계의 개요 | page 1

2

광물 및 탄광업 규제 체제 | page 5

3

광물 개발 협정 (CoW) | page 33

4

인도네시아 광업 분야 세제 | page 43

5

광업 투자 추가 규제 사항 | page 57

---

## Appendices

A Minimum processing and refining requirements prior to export | page 65

B 지방세 | page 71

C 에너지광물자원부 | page 72

D 산업 연합 | page 73

E Summary of CCoW and Mineral CoW generations | page 75

F Glossary | page 79

G About PwC | page 81

H PwC Mining Contacts | page 83

Map: Indonesian Mining Areas Map  
(provided in insert pocket)

---

# 발간사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자원개발 및 인프라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한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도 이에 발맞추어 많은 사업기회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석탄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작년까지 많은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35 GW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 인프라 스트럭쳐의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광업 분야도 많은 투자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의 많은 자원 관련 기업도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통하여 증가하는 경쟁속에서도 돋보이는 발군의 성과를 내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에너지/자원 개발 정책 및 투자 환경 세미나'를 기념하여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PwC Indonesia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광업 투자 및 법령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세미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자가 인도네시아 진출한 한국의 에너지 기업과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감수한 대사관의 송요한 상무관과 방대한 자료를 번역하고 정리해서 원고를 작성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PwC의 정태훈 회계사와 남승수 회계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2월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조태영

# Foreword

Welcome to the eighth edition of the PwC Indonesia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It is now more than seven years since the 2009 Law on Mineral and Coal Mining No. 4 of 2009 (the “Mining Law”) was promulgated. While various implementing regulations, including a number of amendments, have been issued by the Government in pursuing the goals of the Mining Law, there remain many challenges for investors, particularly in the current low commodity price environment.

These challenges apply for holders of both Contracts of Work (“CoWs”) and Coal Contracts of Work (“CCoWs”) issued under the pre-2009 mining regime, as well as holders of Mining Business Licences (*Izin Usaha Pertambangan*, or “IUPs”) issued under the new regime.

Issues include:

- the protracted CoW/CCoW renegotiation process;
- the demands of in-country processing/refining requirements (and the related 2014 ban on the export of unprocessed ores); and
- the numerous changes in regulatory response to the level of foreign ownership.

The Government has signed several renegotiated CoWs/CCoWs for some major mining operations, however many are still in the negotiation o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tage. The completed renegotiations are generally for those Contracts which were not *lex specialis* in nature, but rather were subject to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For those not yet finalised, there are some fundamental disagreements around the *lex specialis* status of the Contracts. Some of the issues still being debated are changes to the applicable fiscal regime (including royalty rates); in-country processing requirements; reductions in the size of the Contract areas; and foreign divestment requirements.

An urgent solution is key, as CoW/CCoW companies still produce the majority of Indonesian coal and minerals, and some significant projects have been put on hold as investors become concerned with uncertainty surrounding their Contracts, and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for extension. Without certainty around the rights to extension of existing Contracts, miners will not be able to commit to large expenditures on exploration, development or downstream processing.

Since the ban on exports of unprocessed (or insufficiently processed) mineral ores came into force on 12 January 2014, the Government has issued various implementing regulations to allow mining companies to continue to export certain types of concentrates provided that those mining companies pay export levies up to January 2017 and commit to building processing/refining facilities in Indonesia.

Questions continue to be raised regard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processing certain types of minerals, especially given current and forecast global and domestic demand and supply projections, as well as commodity price considerations. Another key concern is



Photo source : PT Jembayan Muarabara

the inadequate supporting infrastructure (such as power, rail, roads and ports) to support downstream processing facilities in many areas of the country – meaning that for a miner to develop processing facilities it may also need to develop (or fund) much of the supporting infrastructure, which may not be economically feasible in some cases. At the same time, the ban on export of unprocessed ores means that cash flows may not be available to support investment in downstream processing. In addition, CoW holders have questioned the applicability of the regulations to them, given the *lex specialis* status of CoWs.

Despite the good intention of developing a value-added downstream sector in Indonesia, the timing may not have been right given current global supply and demand considerations for some minerals. The impact of these regulations to date has therefore been that some (if not most) smaller-scale mineral miners have suspended operations and some large scale operations have reduced their mining activities and exports. This has not only impacted the miners themselves but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ndonesia's export revenues.

The Government continues to work on stimulating the development of in-country processing facilities by providing much lower export levies for mining companies which are willing to commit to developing processing/refining facilities.

While this is welcome, other more tailored incentives to investors could be of benefit – for example the Government has recently issued a tax regulation which appears to indicate that smelting businesses may only be eligible for a tax incentive facility, rather than a tax holiday, while a tax holiday facility is likely to be more appealing for a highly capital intensive business due to the sizable up-front investment required and the long payback period.

These investor concerns have been compounded by the introduction of divestment rules that require the early divestment of foreign interests whenever there is a change in the shareholders of a company holding an IUP; the Government's stated plans to raise royalty rates; and a downturn in commodity prices. With respect to divestment rules, the Government has attempted to provide some relief through a new Government Regulation (*Peraturan Pemerintah*, or "GR") which extends the divestment period and provides different divestment thresholds for mining companies which undertake underground and open pit mining, and those which have committed to development of onshore processing.

All of the above means that the Indonesian mining investment environment will continue to be challenging in the short-term. Many investors view Indonesia as having significant geological potential in terms of its coal and mineral resources, but the regulatory uncertainties and, to a

certain extent, the royalty and fiscal regimes have become key deterrents to investment.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in this low commodity price environment when mining companies are looking to improve operating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d are limiting capital spending. There is therefore a real opportunity for improvement in the regulatory climate for mining in Indonesia as investors consider the allocation of their scarce investment funds in the lead up to the next round in the commodity cycle.

## The Guide

This guide is not intended to be a comprehensive study on all aspects of the mining industry in Indonesia but rather a general guide to certain key considerations related to investment and taxation in the sector. Readers should note that information will require updating as regulations change.

Companies intending to invest in Indonesia will need to carry out further research and obtain updated information on investment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They should also consider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s in Indonesia which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uccess of any investment.

PwC Indonesia recommends that investors contact our specialist mining team as they consider investment opportunities. Please see Appendix H for the contact details of PwC Indonesia's mining specialists.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ir assistance in translating our publication to Korean. We hope that our collaboration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it will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bassy, Korean Investors and PwC Indonesia.

'인도네시아 광업 투자 및 법령가이드'의 국문본을 발간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책자는 인도네시아의 광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투자, 세무 및 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 책자가 광업 분야의 기준 투자자와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한 광업 분야가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만큼 경제적으로 관심이 있는 기타 이해관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목차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책자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광산업 규제 체계의 개요
- 광물 및 탄광업 규제 체제
- 광물 개발 협정(CoW)
- 인도네시아 광업 분야 세제
- 광업 투자 추가 규제 사항

2009년 이후 신광업법이 시행된지 7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광업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후 많은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법규를 개정하였지만 아직 까지도 투자자들을 위한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새로운 제도 하에서의 광업 라이선스(Izin Usaha Pertambangan, or “IUPs”) 보유자 뿐만 아니라 2009년 이전 제도 하의 두 광물개발협정(Contracts of Work (“CoWs”)와 Coal Contracts of Work (“CCoWs”)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W/CCoW 재계약 진행
- 국내 가공 및 정제 의무화(미가공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 외국인 투자자 지분제한 등과 관련한 규정 변경

정부는 일부 CoWs/CCoWs에 대하여 재계약을 마쳤으나, 아직 많은 계약들이 재계약 또는 MoU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재계약은 대부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 법과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재계약은 CoWs/CCoWs 계약에서 특별법 우선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협의 중인 이슈 사항으로는 적용 세율(로열티 세율 포함), 국내 가공 의무, 광업 가능 지역의 축소, 투자 지분 처분에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CoW/CCoW 계약을 보유한 회사들이 여전히 인도네시아 석탄 및 광물 생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이러한 불확실성, 특히 계약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부 중요한 프로젝트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약과 관련한 이슈 사항의 빠른 해결이 촉구됩니다. 계약의 연장과 관련한 확실성이 없이는 광물의 탐사, 개발 및 가공과 관련한 대규모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1월 12일 미가공(또는 최소 가공 수준에 미치지 못한) 광물의 수출 제한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업 회사들이 2017년 1월까지 수출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고 인도네시아 내에 가공/정제 시설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특정 형태의 광물을 수출할 수 있는 시행규칙들을 제정하였습니다.

광물의 가공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국내외 수요 및 공급의 예측과 현재 원자재 시세를 고려하여 국내 가공 및 정제 의무화 규정에 많은 회의론이 있습니다. 국내에 가공 시설을 갖추기에 충분치 않은 인프라(전력, 철도, 도로, 항만 등) 또한 이와 관련한 우려 중 하나입니다. 광업 회사들이 국내에서 광물을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에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미가공 광물의 수출 제한 규정이 광업 회사들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CoW 계약 회사들은 CoW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주장하며 미가공 광물 수출 제한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광물 가공 시설을 갖추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도는 좋지만 광물에 대한 현재 세계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의 시행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작은 규모의 광업 회사들은 운용을 중단하거나, 큰 규모의 회사들도 광업활동과 수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광업 회사들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 광물의 가공/정제 시설을 갖추는 광업 회사에 훨씬 낮은 수출 관련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가공 시설을 늘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제련소 등의 가공 시설 투자와 관련하여 Tax Incentive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Tax Holiday가 보다 큰 규모의 설비 투자나 선도산업에 적용되는 반면 Tax Incentive는 그 보다 낮은 일정 규모 요건을 만족하면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투자자들의 또 다른 우려들로는 IUP 보유 회사의 주주 교체시 외국인 투자 지분의 조기 처분 규정, 정부의 로열티 세율 인상 계획,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있습니다. 투자 지분 처분 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or “GR”)을 통하여 해당 규정에 일부 경감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당 GR을 통하여 처분 기한이 연장되거나 지하 및 노천 채굴 또는 국내 가공 시설 여부에 따라 의무 처분 지분율이 달리 적용되기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석탄과 광물 자원을 고려하여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투자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낮은 원자재 시세 하에 광업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면서 운용의 효과성과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시기에 상기의 규정 내 일부 불확실성, 로열티 세율이나 적용 세제 등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투자 유치를 꾀하여야 합니다.

동 책자는 인도네시아 광업산업의 모든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아니며, 투자, 세무 및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북입니다. 또한 동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2016년 5월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책자가 출간되는 시점까지 책자에 수록된 모든 정보가 정확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독자들이 뒤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해석이 나오며 규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책자는 전문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 책자에서 다룬 사항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책의 마지막에 수록한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독자들이 동 책자를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고, 또한 모든 독자들이 인도네시아의 발전 분야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 책자의 발간 및 번역에 도움을 주신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국대사관)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한국대사관과 및 한국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Sincerely

**Sacha Winzenried**  
Lead Advisor - Energy, Utilities & Mining  
PwC Indonesia

# 광산업 규제 체계의 개요



Photo source : PT Agincourt Resources

## Overview

인도네시아는 석탄, 구리, 금, 주석, 니켈 등을 대량 생산하는 세계 광업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이며, 특히 세계 최대의 발전용 석탄(thermal coal) 수출국가이다.

석탄과 광물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광업 기업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이지만 인도네시아의 광업 정책 및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 간 인도네시아의 광업 투자는 그린필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투자만 이루어졌으나, 최근 미가공(또는 최소 가공 수준에 미치지 못한) 광물의 수출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가공 시설과 관련한 건설활동이 시작되었다.

신광업법(Mining Law, 2009년 1월 12일에 제정되어 이전의 법령을 대체)과 그에 따른 시행령은 투자자들에게 정책 및 규제와 관련한 일부 확실성을 제공하였다. 신광업법 도입 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광업 투자를 위해서 아직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를 위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광물 개발 협정(CoW) 체계와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을 위한 licensing 시스템은 새로운 지역 기반 licensing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신광업법으로 대체되었다. 신광업법은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한 투명한 licence를 허가 절차를 적용하였다.

신광업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광산 승인절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 광업 정책, 표준, 지침 및 기준을 설정하고 분쟁해결에도 참여하여 광업의 개발과 관리 및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광업법은 인도네시아 광업 투자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7년간 보여졌듯이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의 광물 개발로부터 얻은 이익을 높은 수의성을 추구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균형 있게 나누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신광업법 하에서 중앙정부는 몇몇 지방 정부가 사전에 허가된 지역 내에서 광업 licence를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굴 가능 지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중앙정부는 광업 가능 지역 결정에 대한 더 높은 통제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임업과 같이 다른 목적을 위해 채굴이 유보되어 있는 지역과의 중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지역 결정 작업이 어려움에 따라 광업 가능 지역 mapping 작업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연 자원의 공급이 증가되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생산자에게 국내 시장 의무 공급 규정(Domestic Market Obligation, DMO)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DMO는 석탄 생산에만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력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5년-10년 화력 발전 증축 계획에 따른 석탄의 국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업 licence 보유자가 하청업체에 광산 업무 전체를 하도급으로 계약하기보다는 일부라도 자신이 직접 수행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광업 licence 보유자에게 더 많은 운영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하도급 업체는 우선 인도네시아 기업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광물 licence 보유자는 2014년 1월 12일 이후 수출 전에 인도네시아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광물 가공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2014년 1월 12일부터 2017년 1월 11일 사이에 제련소 건설이나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수출 세 납부 등의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농축 광물질 (concentrate)의 수출이 허용된다. 현재 가공 설비의 건설의 진척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수출 제한과 관련한 2017년 1월의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광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인도네시아에 유보 및 재투자하는 행위는 지난 6년간 발표된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산 연차 15년 이전까지 투자자들의 광업 사업허가("IUP-OP") 지분을 최대 51%까지 매각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지분 매각 규정은 광업회사가 가공이나 정제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탄광이 노천광인지 지하광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 미가공 광물 수출 제약 및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가공처리 의무화
- 수출 시 정부 지정 측량사로부터의 검증 의무화
- 최소 물량 국내시장 판매 의무 절차(DMO) 도입
- 석탄 및 광물과 같은 원자재 수출 시, 거래의 최소 금액을 정하는 가격 벤치마크 체제 도입
- 광구 보유 발전소(mine mouth power plants)에 사용되는 석탄의 가격결정

최근 발표된 정부 규제는 신광업법의 실행에 대해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나, 광업 활동 가능 지역과 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도 있다. 또한, 투자회수와 국내 가공처리 의무화와 같은 규제들의 경우 법규 적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들은 투자자의 투자 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Contribution to Indonesian economy

광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업의 발전이 없었다면 일부 지역은 현재와 같은 규모와 속도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광업회사가 유일한 고용 창출원이기도 하다.

2015년 광업은 인도네시아 국내 총GDP의 약 4%를 차지하였고, Papua, 중부 Sulawesi, Bangka-Belitung, 서부 Nusa Tenggara and 동부 Kalimantan를 포함한 많은 지역 경제에서는 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1월 시행된 미가공 혹은 최소 가공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광물의 수출제약과 농축 광물질에 대한 점차 증가되는 수출세는 2014년에 광물 생산의 감소를 야기하였으며, 향후 몇 년 간 감소추세가 지속되었다.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광업의 비중은 2013년의 18%에서 2014년 14%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2014년 수준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광물 가공과 정제 설비가 설치되고 고열량탄이 생산되면 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Coal and mineral production profile 2000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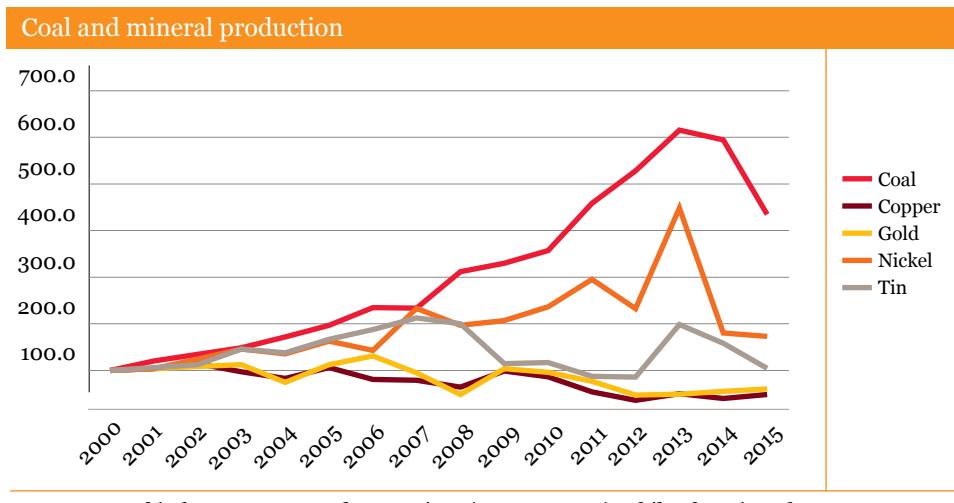
2012 – 2013년 동안 석탄가격이 감소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석탄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전세계적으로 화력 발전의 수요가 커졌고, 특히 이 기간 동안 중국과 인도의 발전 산업으로 인해 석탄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및 전 세계적으로 새로 건설되는 발전소가 2008년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전용 석탄(thermal coal) 생산량 증가 제한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그 생산량은 고작 4억 5천 8백만톤까지만 줄었다. 2015

년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큰 폭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발전용 석탄 생산량이 14%, 즉 3억 9천 2백만톤까지 줄었다. 인도네시아 내 수요 증가 예측에 맞추어 국내 시장으로의 공급은 26%, 즉 9천 6백만톤까지 증가하였다. 2014년 국내 공급은 6%, 즉 7천 6백만톤에 그쳤다. 정부의 35GW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의 적극적인 화력 발전 개발 계획과 석탄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2014 - 2015년 동안 금, 구리, 니켈의 생산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4년 크게 논의되었던 수출허가와 관련한 규정이 연기되면서 2015년 구리의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였다.

미가공 광물의 수출 제약과 농축 광물질의 수출세 도입으로 인하여 금, 주석, 구리 및 니켈의 생산량이 2016년에도 증가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17년부터 증가가 예상되는 제련소 시설로 인하여 주석, 구리 및 니켈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인도네시아의 석탄과 광물의 생산량 추세는 아래 도표와 같다(2000년도의 생산량을 100으로 기준함).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글로벌 원자재 수요로 인해 투자에 매력이 있는 곳이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미해결된 신광업법 관련 논쟁사항을 조속히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 광물 및 탄광업 규제 체제



Photo source : PT Bukit Asam (Persero) Tbk

## The Mining Law

광물 및 석탄 광산 활동은 2009년 1월 12일에 제정된 신광업법(Law on Mineral and Coal Mining No. 4/2009 ("Mining Law"))에 의해 규제된다. 이 법령은 기존의 모든 광물개발협정 (CoW/CCoW)을 포함한 2009년 이전의 인도네시아 광업권 체제 관련 법령인 Mining Law No. 11/1967을 대체하는 것이다. 신광업법은 규정의 상당 부분이 구체적인 시행방법의 내용을 제시하는 시행령에 의존하게 된다. 핵심 시행령의 대부분이 공표되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2009년 도입된 신광업법은 예전 인도네시아 광업 규제 체제에 큰 변화를 주었다. 새로운 광산 프로젝트는 더 이상 계약기반 채굴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광물개발협정 (CoW/CCoW)과 인도네시아 투자자를 위한 광권(Kuasa Pertambangan, "KP") 모두 단일화된 특정 광업지역 기반 Licence System으로 대체되었다.

신광업법은 지역 및 자원 종류를 기반으로 한 3가지 Mining Licence를 규정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 Izin Usaha Pertambangan (IUP or Mining Business Licence);
-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IUPK or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ce); and
- Izin Pertambangan Rakyat (IPR or People's Mining Licence).

인도네시아 국민의 KP licences 소유권 제약과는 달리, 광업사업허가(IUP)는 인도네시아에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 소유할 수 있다.

신광업법은 다양한 시행령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GR")이 다음 분야와 관련하여 공표되었다.

- Mining Areas (GR 22/2010)
- Mining Business Activities (GR 23/2010 as amended GR 24/2012, GR 1/2014 and GR 77/2014)
- Mineral and Coal Mining Direction and Supervision (GR 55/2010); and
- Reclamation and Mine Closure (GR 78/2010)

또한,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MoEMR")에서 몇 가지 Ministerial regulation을 다음 분야와 관련하여 공표하였다.

- Mining Services (PerMen 28, as amended by PerMen 24)
- Domestic Market Obligation ("DMO") (PerMen 34)
- Benchmark Price (PerMen 17)
- Increasing Mineral Value Added Through Processing and Refining Activities (Permen 1 as amended by Permen 8)
- Mine Relamation & Closure (PerMen 7)
- IUP Tender Procedures and Special IUP Areas in Metal Minerals and Coal Mining (PerMen 28)
- Determination of mining areas (PerMen 37)

- Detailed Procedures for Granting Operation Production IUPs and IUPKs (PerMen 32 in 2013 as amended by PerMen 32/2015)
-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the Granting of Recommendations for the Export of Processed and Refined Minerals (PerMen 5/2016)
- Price Determination in Divestment and Changes of Share Ownership (PerMen 27)
- Coal Price Determination for Mine Mouth Power Plant (PerMen 9/2016)
- Mining Area Stipulation Procedures (PerMen 12/2011)
- Authority Delegation for Mining Licence Issuance (PerMen 25/2015)

The Director General of Minerals and Coal (“DGoMC”)는 다음 분야와 관련한 규정과 시행규칙 (Circulation Letter)을 공표하였다.

- 로열티 계산(Royalty Calculation)
- 가격 벤치마크 (조정 가격과 특정 탑입 및 사용에 관한 벤치마크 포함, Benchmark Price)
- DMO Credits
- Affiliates
-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Issuing Recommendations for Registered Coal Exporters
- Production costs for determining the Coal Price for Mine Mouth Power Plants
- Metallic Mineral Price Determination
- Postponing on Granting Operation Production IUPK for Hauling and Coal Sales in Foreign Investment.

또한, 재무부(“MoF”)는 농축 광물질에 대한 수출세와 같은 상기의 GR과 PerMen 관련 규칙을 공표하였다(PMK 75 as amended by PMK 128, PMK 6, and PMK 153, PMK 136). 그리고 PMK 67 as amended by PMK 107 (Management of State owned Assets) 규정도 신설되었다.

현재 새로운 광업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현재 신광업법(2009 Mining Law)의 규제 체계는 다음과 같다.

Mining Law Law No.4/2009				
Government Regulations				
Mining Areas GR No. 22/2010 1 Feb 2010	Mining Business Activities GR No. 23/2010 1 Feb 2010 (as lastly by GR 24 on 21 Feb 2012, GR 1 on 11 Jan 2014, and GR 77 on 14 Oct 2014 )	Mine Reclamation & Closure GR No. 78/2010 20 Dec 2010	Mineral and Coal Mining Direction and Supervision GR No. 55/2010 5 July 2010	
Mining Services PerMen No. 28/2009 30 Sept 2009 (amended by PerMen 24/2012 on 8 Oct 2012)	Mining Area Stipulation Procedure PerMen No. 12/2011 11 Aug 2011	Benchmark Pricing PerMen No. 17/2010 23 Sept 2010	IUP Tender Procedures PerMen No. 28/2013 13 Sept 2013	Detailed Procedures for Granting Operation Production IUPs IUPKs PerMen No. 32/2013 19 Nov 2013 (amended by PerMen No. 32/2015 on 23 Oct 2015)
Authority Delegation for Mining Licence Issuance PerMen No. 25/2015 12 Aug 2015	Determination of Mining Areas PerMen No. 37/2013 24 Dec 2013	Mineral Processing PerMen No. 1/2014 (amended by PerMen 8 on 4 March 2015)	Mine Reclamation and Closure PerMen No. 7/2014 28 Feb 2014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Export of Processed and Refined Mineral PerMen No. 5/2016 5 Feb 2016
Mine Mouth Power Plant PerMen No. 9/2016 4 Apr 2016	DMO PerMen No. 34/2009 31 Dec 2009	Divestment PerMen No. 27/2013 13 Dec 2013		
MoEMR Regulations				
DGOMC Circulars				
Royalty Calculations No. 32.E/35/DJB/2009	DMO Credits No. 5055/30/DJB/2010	Coal Benchmark Price : No. 515.K/32/DJB/2011 No. 999.K/30/DJB/2011 & No. 644.K/30/DJB/2013	Affiliates No. 376.K/30/DJB/2010	Coal Benchmark Price for Certain Types and Uses No. 480.K/30/DJB/2014
Coal Benchmark Price for Mine-Mouth Power Plant : No. 953.K/32/DJB/2015	Procedures and Requirement for issuing Recommendation for Registered Coal Exporter : No. 714.K/30/DJB/2014			

## **Legal Framework**

### **Mining Areas**

광업 활동은 중앙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광업 지역 (Wilayah Pertambangan – “WP”)을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광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광업사업지역 (Wilayah Usaha Pertambangan – “WUP”): 큰 규모의 상업위주 광업 지역
- 국가전략을 위한 예비 사업 지역 (Wilayah Pencadangan Negara – “WPN”): 국가 전략을 위한 주 가용 채굴 매장량 지역
- 주민 광업 지역 (Wilayah Pertambangan Rakyat – “WPR”): 작은 규모의 지역기반 광업 지역

WP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 정부는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도움을 받아 광업 가능 지역 mapping을 해야 한다. 해당 지역은 광업만을 위함이 아니며, 산림업과 같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지도는 5년에 한번씩 업데이트된다.

2013년 12월 24일, 에너지광물자원부(MoEMR)는 광업지역을 결정하는 다음의 실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규정 No.37/2013 (PerMen 37)을 공표하였다.

- 광물 생산과 관련한 암반층 도면
- 광물 생산량 지표 자료
- 잠재적인 광물 생산량 자료
- 광물과 석탄의 보존량 자료

현재 광업가능지역 mapping은 진행 중이며 지정 지역을 보여주는 최종 지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정부가 mapping 작업을 통해 Mining Licence 리스트인 “clean and clear”를 제작한 것이다. 리스트는 DGoMC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 유효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리스트는 DGoMC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재까지 전체의 약 64%, 약 10,000 개가 넘는 IUPs가 “clean and clear”상태로 인증되었다. “clean and clear” 인증을 받지 못하면 에너지광물자원부(MoEMR)가 IUPs를 폐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 **Mining Licences**

광업지역 내에서 Mining Licence는 한 개 이상의 단체에 발급될 수 있다.

- 광업사업허가 (“IUP”)는 WUP지역에서 광산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허가이다.
- 특별광업사업허가 (“IUPK”)는 WPN 지역에서 광산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이다.
- 주민광업사업허가(“IPR”)는 제한적인 투자 금액으로 WPR지역에서 광산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다. 외국인 투자자는 IPR을 허가 받을 수 없다.

다음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광업사업허가(IUP)와 특별광업사업허가(IUPK)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 Ownership of Mining Licences

IUP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발행된다.

- 인도네시아 법규 하에 설립된 기업
- 법인 회사
- Partnership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개인

기업체는 인도네시아 자국민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PT" 또는 "PMDN")와 외국인 소유의 회사("PMA")를 모두 포함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이다. 기존 광업법(Mining Law No.11/1967) 하에서 광물개발협정허가(CoW/CCoW)는 내외국인 모두 보유 가능하였으나, KP는 내국인 투자자들에게만 발행 되었다.

신광업법은 광업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외국인 투자자간의 많은 차별을 제거했으며, 특정 생산연도 이후 지분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광업 분야에 100% 외국 투자를 허용하는 점은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행한 Negative List 와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 One Mining Licence per Company

신광업법의 한 가지 특징은 비상장회사는 licence를 한 개만(하나의 IUP 또는 IUPK)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광업법은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회사만이 licence를 한 개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자격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경우에 광업사업허가(IUP) 또는 특별광업사업허가(IUPK)는 IUP/IUPK 보유자에 양도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양도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추가적인 정부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경과 규정에 의하면, 다수의 KP를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는 IUP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licence 신청은 별도의 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GR 24의 새로운 양도 규정은 경과규정에 준하여 회사가 IUP 양도를 통해 다수의 IUP를 소유할 수 있게끔 IUP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 Exploration and Production Licences

IUP 또는 IUPK는 2개의 광업 활동 단계((i)탐사, (ii)생산 운영)에서 승인된다. 각 단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탐사사업허가(Exploration licence)는 WUP/WPN지역에서의 기초조사, 탐사 및 예비조사 활동을 허가한다.
- 운영 및 생산사업허가(Operation Production licence)는 WUP/WPN 지역 내에서 건설, 채굴, 공정, 정제를 허가한다.

GR 23의 최근 개정인 GR 77에 의하면 만약 운영 및 생산사업허가 보유 IUP 기업("IUP-OP")은 직접 운송 및 판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활동들은 다음의 두 기업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 가공 및 정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IUP-OP 기업
- 가공 및 정제와 관련한 특별 IUP를 보유한 다른 기업

## Specific licences

광업지역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고 거래, 가공 및 정제 활동만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특별 IUP-OP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licence는 보유자가 수행할 다음의 특정 활동들에 의해 구분된다.

- 운송 및 판매 IUP-OP (Transport and Sales IUP-OP, 석탄/광물 운송과 트레이딩을 하는 기업들이 해당)
- 가공 및 정제 IUP-OP (Processing and/or Refining IUP-OP)

이러한 운송 및 판매와 가공 및 정제 IUP-OP를 신청하는 기업들에 적용되는 규정은 PerMen 32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새롭게 제한되고 있다. PerMen 32 개정 조항에 의하면 산업지역에서 비영리목적으로 광업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들에게는 PerMen 32내 요구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석탄 채굴에 있어, DGoMC의 지침 No.02.Inc/30/DJB/2015에 따르면 동일 지역 내의 판매나 PMA 회사들은 운송 및 판매 IUP-OP (Transport and Sales IUP-OP)의 발행이 적용되지 않는다(2016년 5월 16일 시점 적용되는 내용).

## Licensing

가공 및 정제 IUP-OP에는 두 단계의 licence 취득 과정이 있다. 최초에 Principle Licence를 발급받고 이후에 최종 IUP-OP를 발급받는다. 흥미로운 점은 최종 가공/정제 IUP-OP를 발급받는 것이 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급 기관은 상업적인 생산 활동 이전에 특정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각 생산사업허가의 주요한 권리와 의무 및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운송 및 판매 IUP-OP	가공 및 정제 IUP-OP
권리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원의 종류나 생산량의 변경은 licence의 수정이 필요함.</li><li>• 연간 작업 내용과 예산을 제출하여야 함.</li><li>• 월별/분기별/연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li><li>• 국내부가가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인도네시아 내 가공처리 의무화 등)</li><li>• 석탄과 광물을 정부 벤치마크 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함.</li></ul>	
제한사항: 주주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IUP-OP 보유자 주식의 이전 전에 관련 발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IUP-OP 보유자 주식의 이전 전에 관련 발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li><li>• 그러나 Principle Licence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승인은 불필요함.</li></ul>
제한사항: 광물의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광물은 "clean and clear" 인증이 발급된 광업지역에서의 매입하거나 또는 광물 구매자와 다른 발급기관에서 licence를 받은 트레이딩 회사로부터의 매입만 가능함.</li><li>• 광물개발협정 (CoW/CCoW)를 보유하지 않은 공급자일지라도 경과규정에 따라 PerMen 32의 각 조항에 부합한다면 해당 공급자로부터 매입이 가능함 (참고로 모든 CoW/CCoW의 모든 기존 계약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PerMen 32 조항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도록 되어있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광물은 IUP-OP 보유자 또는 다른 가공/정제 licence 보유자나 트레이딩 회사로부터의 매입만 가능함.</li><li>• 광물개발협정 (CoW/CCoW)를 보유하지 않은 공급자일지라도 경과규정에 따라 PerMen 32의 각 조항에 부합한다면 해당 공급자로부터 매입이 가능함 (참고로 모든 CoW/CCoW의 모든 기존 계약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PerMen 32 조항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도록 되어있음).</li></ul>

## Temporary Licences

석탄/광물의 채굴이 주 영업활동이 아닌 경우 다음의 임시 licence 이용이 가능하다.

- 임시 운송 및 트레이딩 licence: 탐사단계에서 채굴한 석탄/광물을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광업 회사에 부여한다.
- 임시 트레이딩 IUP: 광업 이외의 회사(예: 도로 건설)가 그들의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석탄/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 부여함. 이 licence는 회사가 석탄/광물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요구된다.

두 임시 licence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다;

- 임시 licence는 1회에 한하여 발급되어 연장될 수 없으며 특정 물량의 석탄/광물에 한정된다.
- licence 보유자는 판매된 석탄/광물에 대해 생산 로열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 석탄/광물은 국내에 판매되어야 한다.

임시 licence는 석탄/광물이 채굴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승인기관에 의해 발급된다(아래 표 참조).

PerMen 32 이전에 발급된 운송 및 판매 IUP-OP와 가공 및 정제 IUP-OP Licence는 2015년 11월 18일까지 PerMen 32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 ***Authority to issue an IUP/IUP-OP/Specific Licence***

IUP는 광물 지역과 그와 관련된 환경에 따라, 지방정부(Regent/Governor) 또는 중앙정부(에너지광물자원부(MoEMR))로부터 발행된다. IUP를 외국인 보유 기관에게 발행하는 것은 중앙 정부만이 licence를 승인할 수 있다. 또한 광물개발협정(CoWs/CCoWs)을 광업사업허가(IUP)로 전환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PerMen 25/2015를 통해 MoEMR은 PMA 회사를 위한 다음 licence의 발행 권한을 투자조정청에 위임하였다.

- IUP Exploration;
- IUP-Operation Production including its extension;
- Cancellation of IUP due to returned to the Government;
- IUP-OP for Transport and Sales including its extension;
- IUP-OP for Processing and Refining including its extension;
- Temporary Licence for Transport and Sales;
- IUP-OP for Sales;
- Principle Licence for Processing and Refining; and
- Business Licence for Mining Service including its extension.

탐사사업허가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탐사사업허가(Exploration IUP)

승인자	프로젝트 위치
BKPM	Licence가 PMA 회사에 발행되거나 CoWs/CCoWs에서 전환되는 경우
장관	한 개 지역을 초과하여 cover하거나, licence가 외국인 소유 인도네시아 회사에 발행되었을 경우(i.e. a PT PMA company or converted CoWs/CCoWs)
주지사	주 내에 있으나 2개 이상 군을 cover할 경우
시장/군수	지역이 도시 또는 군내에 있을 경우

IUP-OP의 발행은 상기 표의 프로젝트 위치별 승인자 구분을 따르며 공정 플랜트, 운반 도로, 저장고, 항만 시설과 같은 광업 인프라 위치와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에 의해 구분된다.

### 운영 및 생산 사업허가(IUP-OP)

승인자	프로젝트 위치	환경적 영향
BKPM	Licence가 PMA 회사에 발행되거나 CoWs/CCoWs에서 전환되는 경우	Licence가 PMA 회사에 발행되거나 CoWs/CCoWs에서 전환되는 경우
장관	광산 지역, 공정, 정제, 항만 시설이 한 개의 주보다 많이 위치해 있거나, Licence를 PT PMA 회사에 발행했거나, 광물개발협정 (CoWs/CCoWs)을 전환 시킨 경우	시장/군수와 주지사의 권유에 근거하여 환경적 영향이 한 개의 주보다 많이 있거나, Licence를 PT PMA 회사에 발행했거나, 광물개발협정 (CoWs/CCoWs)을 전환 시킨 경우
주지사	광산 지역, 공정, 정제, 항만 시설이 한 개의 군보다 많이 위치해 있으나 한 개의 주 내에 있을 경우	시장/군수의 권유에 근거하여 환경적 영향이 한 개의 군보다 많이 있거나, 한 개의 주 내에 있을 경우
시장/군수	광산 지역, 공정, 정제, 항만 시설이 한 개의 도시 및 군내에 위치했을 경우	장관과 주지사의 권유에 근거하여 환경적 영향이 한 개의 도시 및 군에 주었을 경우

프로젝트 위치와 환경적 영향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면 어느 절차를 통해 IUP-OP가 승인이 될지 불확실하다.

많은 광업 프로젝트는 채굴, 공정, 운송, 항만시설이 다른 군 지역 또는 주 내에 있기 때문에, 주지사나 장관이 채광사업허가 재발급에 있어서 예전 KP Licensing 시스템 보다 더 많은 통제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 특정 Licences (운송 및 판매 IUP-OP와 가공 및 정제 IUP-OP)

승인자	프로젝트 위치
BKPM	Licence가 PMA 회사에 발행되는 경우
장관	<p>운송 및 판매 활동이나 가공 및 정제 활동이 한 개 지역을 초과하여 이루어지거나, Licence가 외국인 소유 인도네시아 회사에 발행되었을 경우</p> <p>가공 및 정제 IUP-OP에 적용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재가 수입된 경우</li> <li>광산 지역과 정제 시설이 다른 주에 위치하는 경우</li> <li>광물을 공급하는 회사의 광업 Licence가 장관에 의해 발급된 경우</li> </ul>
주지사	<p>운송 및 판매 활동이나 가공 및 정제 활동이 주 내에서 이루어지나 2개 이상 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p> <p>가공 및 정제 IUP-OP에 적용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산 지역과 정제 시설이 다른 군에 위치하는 경우</li> <li>광물을 공급하는 회사의 광업 Licence 자체가 주지사에 의해 발급된 경우</li> </ul>
시장/군수	<p>운송 및 판매 활동이나 가공 및 정제 활동이 도시 또는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p> <p>가공 및 정제 IUP-OP에 적용되는 사항:</p> <p>광물을 공급하는 회사의 광업 Licence 자체가 시장/군수에 의해 발급된 경우</p>

## Authority to issue an IUPK

지역적 운영 범위와 상관없이, IUPK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행된다. WPN의 개발은 국유 기업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낙찰되는 국유 기업이 없을 경우 IUPK는 입찰 과정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어질 수 있다.

## Licence Terms and Extensions

신광업법과 그와 관련된 규정은 Mining Licence를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탐사사업허가	IUP-OP	IUP-OP 연장기간
석탄	7년	20년	10년 x 2
금속 광물	8년	20년	10년 x 2
비금속 광물	3년	10년*	5년 x 2*
암석	3년	5년	5년 x 2

\* 특정 비금속 광물은 20년 채광사업허가와 최장 10년까지 두 번 연장이 가능함.

IUP-OP의 두 번째 연장이 만료되면, 광업사업허가지역 (Wilayah Izin Usaha Pertambangan, WIUP)은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 반납된다. 만약 WIUP가 금속광물과 석탄 지역이라면 WPN-OP나 WIUP/WIUPK-OP로 발급될 수 있다. WIUP는 입찰을 통해 결정되지만 WIUPK는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기존 IUP-OP 보유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Specific Licence

	Principle Licence	Special IUP-OP	Special IUP-OP의 연장기간
운송 및 판매 IUP-OP	N/A	3-5년	매 연장 시 최대 3년
가공 및 정제 IUP-OP	3년 (한번의 1년 연장 가능)	최대 20년 (건설 2년 포함)	매 연장 시 최대 10년

### IPUK

	탐사사업허가(IUPK)	생산사업허가(IUPK)	연장기간
석탄	7년	20년	10년 x 2
금속 광물	8년	20년	10년 x 2

### Licence Areas

GR 23의 중요한 점은 석탄과 금속 광물의 생산사업허가 규모를 탐사기간 3년 후에는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비금속 광물과 암석은 이보다 적음). 생산사업허가가 발행되면, 생산 단계에서의 최대 면적은 줄어든다.

탐사사업허가(IUP) 탐사사업허가		GR 23에 의해 탐사 3년후 축소	생산사업허가
석탄	5,000ha – 50,000ha	최대 25,000ha로 줄여야 함	최대 15,000ha
금속 광물	5,000ha – 100,000ha	최대 50,000ha로 줄여야 함	최대 25,000ha
비금속 광물	100ha – 25,000ha	12,500ha (2년 후 적용)	최대 5,000ha
암석	5ha to 5,000ha	2,500ha (1년 후 적용)	최대 1,000ha

탐사사업허가(IUPK) 탐사사업허가		GR 23에 의해 탐사 3년후 축소	생산사업허가(IUPK)
석탄	최대 50,000ha	최대 25,000ha로 줄여야 함	최대 15,000ha
금속 광물	최대 100,000ha	최대 50,000ha로 줄여야 함	최대 25,000ha

IUP/IUPK는 광물 또는 석탄의 한 종류만으로 발행된다. 다른 광물이 발견될 경우, 관련 정부기관이 다른 광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IUP/IUPK를 발행할 수 있다. 탐사사업하가 보유자는 추가 광물 허가에 대해서 다른 투자자보다 관련 정부기관에 허가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 Tender Requirements for New Mining Licences

새로운 IUP와 IUPK는 직접 지명보다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발급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기관은 IUP에 입찰할 수 있으나, IUPK허가는 국유 기업이 우선권을 가진다. 낙찰된 기관은 특정 석탄이나 광물에 대한 탐사 IUP/IUPK를 발급 받는다. 입찰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며, 관련 정부기관이 KP를 직접 승인했던 과거 광업법과의 큰 차이점이다.

입찰 과정 및 WIUP와 WIUPK의 선정 기준의 내용은 GR 23(as amended by GR 24)과 PerMen 28에서 규정하고 있다.

### Tender Procedures

입찰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입찰 과정은 입찰 시작일 3개월 전에 발표해야 한다.
- 모든 WIUP은 입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WIUPK는 중앙정부가 국유 기업이나 지역 소유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다. WIUPK의 입찰은 하나 이상의 국유 기업이나 지역 소유 기업이 경쟁하거나 제안을 수용한 국유 기업이나 지역 소유 기업이 없는 경우에만 수행된다. 이 경우 WIUPK는 입찰을 통해 국유 기업이나 지역 소유 기업에게 부여되며 다른 입찰자가 없는 경우 인도네시아 기업에게 부여된다.
- 입찰과정과 입찰 위원회의 설립은 WIUPK의 경우에는 장관에 의하여, WIUP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위치에 따라 장관/주지사/시장군수에 의하여 통제된다. 입찰 위원회의 구성은 최소 구성원수와 위원회 구성원의 최소 경력 조건 및 특정 지역정부의 대표를 포함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WIUP의 면적에 따라 WIUP 입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WIUP			WIUPK
≤ 1,000 ha	1,001 – 5,000 ha	> 5,000 ha**	
• 지역 소유의 기업	• 지역 소유의 기업	• 지역 소유의 기업	• 지역 소유의 기업
• 인도네시아 기업	• 국유 기업	• 국유 기업	• 국유 기업
• 조합 또는 개인 (회사나 파트너 쉽 포함)	• 인도네시아 기업*	• 인도네시아 기업*	• 민영 기업
	• 조합	• 외국인 소유 기업	

\* 인도네시아 기업은 인도네시아인이 완전히 소유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 5,000 ha를 초과하는 WIUP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 회사(PT PMA)를 통하여야 한다.

- 입찰자들은 특정 행정적, 기술적, 재무적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f. 사전 심사와 최종 입찰의 두 단계가 존재한다.
  - i. 사전 심사 단계에서 입찰자들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재무적 조건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 ii. 사전 심사를 통과한 모든 입찰자들은 입찰 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위원회는 제안된 WIUP을 방문할 수 있다. 입찰자들에 대한 평가는 40% 비중의 사전 심사 결과와 60% 비중의 입찰 가격 심사의 가중평균 결과로 이루어진다. 입찰 가격은 보상금액(채굴이나 지질학 정보 및 각 WIUP 및 WIUPK 투자에 대한 보상)보다 낮을 수 없다. 보상금액은 다른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 g. 낙찰자 발표 후 3영업일 이내에 다른 입찰자들이 입찰 과정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장관, 주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5 영업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

입찰자는 새로 발급되는 licence 정보 관리를 위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의 10%를 국유은행에 보증금으로 현금 예치하여야 한다. 낙찰된 입찰자는 5 영업일 이내에 입찰액을 지불해야 한다.

## **Domestic Market Obligation (“DMO”)**

이 정책은 자국 수요 증가, 특히 석탄 수요 증가에 대한 국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신광업법 및 관련 규정은 중앙정부가 각 광업 생산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DMO 체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도입한 생산 및 수출에 대한 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DMO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PerMen 34에 의해 제정되었다.

DMO는 모든 종류의 석탄 및 광물에 적용된다. 광산회사는 광물/석탄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DMO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PerMen 34와 GR 23에는 DMO 비율 규정이 없으며, 대신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장관이 특정 연도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1. 국내 이용자들은 전년도 3월까지 예측치를 제출해야 한다.
2. 장관은 제출된 국내 예측치와 광산회사들의 생산 계획을 검토 및 계산을 수행한다.
3. 장관은 최소 DMO비율에 대해서 전년도 6월까지 Decree를 발행하며, 이 Decree에는 국내 이용자들과 그들의 수요가 기술되어 있다.
4. 허가증 발급 기관 (Minister, Governor, Mayor/Regent)에 당해 연도 작업 프로그램 및 예산을 제출해야 하며 DGoMC는 DMO 비율에 대해서 확약해야 한다.

DMO가 적용되는 판매에 대해서는 Ministerial Regulation에 따라 최저 가격에 대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PerMen 34는 수출에 적용되는 동일한 최저가격도 명시하고 있다(아래의 Coal and Mineral Price Benchmark 참조).

PerMen 34는 광산회사가 DMO를 초과했을 경우, DMO 기준치에 못 미친 회사에게 Credit으로 판매/양도할 수 있는 'Cap and Trade'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DMO Credit의 거래 메커니즘은 2010년 11월 29일 제정된 Circular 5055/30/DJB/2010에 의해서 결정되고, DMO Credit은 DGoMC의 승인 하에 광업회사 간에(광업회사를 대신해서 Credit을 소유하고 있는 트레이더 포함) 양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DMO Credit의 가격 메커니즘은 시장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까지 DMO는 석탄에만 적용된다. 2016년에는 1억 천 백만톤을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설정하였다(연간 생산량의 약 26.5%). 참고로 2015년에는 82개의 석탄 회사들이 9천 2백 3십만톤을 공급하도록 배정되었다. 정부가 35GW 전력 플랜트 증가를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DMO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Coal and Mineral Price Benchmarking

GR 23은 MoEMR이 광물과 석탄 판매 공시 가격 책정 체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PerMen 17에 규정되어 있다.

DGoMC를 통해서 MoEMR은 석탄 및 금속 광물의 벤치마크가격 결정을 담당하고, 주지사와 군수(또는 시장)는 비금속 광물 및 암석 벤치마크 가격 결정을 담당한다.

벤치마크가격은 FOB Vessel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인도 시점이 FOB Vessel(i.e. FOB barge or CIF) 시점과 다르면 벤치마크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 가격에는 선적, 측량, 보험, 환적 비용이 포함된다(금속 광물의 경우에는 위의 조정가격에 Treatment와 정제 비용 추가).

벤치마크 가격은 정부로 열티 계산시 최저 가격 역할을 한다. 실제 판매 가격이 벤치마크가격보다 높다면, 정부로 열티는 실제 판매 가격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에, 실제 판매가격이 벤치마크 가격보다 낮으면, 정부로 열티 계산은 벤치마크 가격 기준으로 하게 된다.

벤치마크가격은 즉시인도판매(Spot Sale)와 장기 판매(Long-Term Sale)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장기 판매의 경우 PerMen 17에 의해 광업 회사들이 12개월마다 판매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석탄의 경우, 장기 판매 가격은 이전 3개월치 가중평균 벤치마크가격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석탄 회사는 장기 판매 동의서를 체결하기 전에 DGoMC에 제안 판매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벤치마크가격은 매달 업데이트되며,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된다(석탄의 경우 글로벌 및 인도네시아 석탄 가격 인덱스에 기반). DGoMC는 다음 사항들을 정하여 몇 가지 규정들을 발표하였다;

- Steam Coal과 Coking Coal에 적용되는 벤치마크 가격 계산 공식과 원가 조정내역
- 특정 종류의 석탄(e.g. fine coal, reject coal, and coal with specific impurities)과 특수 목적을 위한 석탄(예: 석탄 채광 과정에 직접 사용, mine mouth에서 석탄의 정제 과정에 사용, 광구 근처의 Community Development("CD")에 사용)의 벤치마크 가격 계산 지침

특정 종류의 석탄의 벤치마크 가격은 DGoMC에 의해 결정된 몇 가지 조정 요소들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반면 특수목적을 위한 석탄 가격은 일반적으로 DGoMC에 의해 결정된 생산원가에 이익을 가산하여 결정된다.

## **Mine Mouth Power Plant**

2016년 4월 4일 MoEMR은 광구 보유 발전소("Mine Mouth Power Plants")의 석탄 공급과 가격과 관련하여 규정 No.9/2016(PerMen 9)를 발표하였다.

PerMen 9에 의하여, Mine Mouth Power Plants의 기본 석탄 가격은 생산원가(DGoMC에 의하여 결정됨)에 석탄의 열량과 무관하게 15%에서 25%의 마진이 가산되어 결정된다. 마진은 광구 소유자와 발전사가 PerMen 내 제시된 범위 안에서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의로 인해 마진을 결정하지 못하면 이는 MoEMR이 결정한다. MoEMR에서 승인되면 기본 석탄가격은 Power Purchase Agreement 기간동안 유효하다. 광구로부터 발전사의 석탄적재장소로의 운반비를 제외한 운반비는 가격 계산에서 제외된다.

Mine Mouth Power Plants의 광구 소유자는 Clean-and-Clear List에 등록된 채굴권을 가져야 하고 Power Plant에서 요구하는 일정 유보금과 석탄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광구 소유주는 Power Plant는 회사의 지분의 10%를 소유하여야 한다. 또한 광구와 발전소간의 거리는 최대 20키로미터이다.

## **New Listing Rules for Mining Companies**

Indonesia Stock Exchange ("IDX") Decision No. KEP-00100/BEI/10-2014에 따라 광업 (광물 및 석탄) 회사의 상장 규정은 단순화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광업 licence를 가지고 있는 광업 회사나 다음의 광업 자회사를 지배하고(일반적으로 지분율 50% 초과) 있는 회사에 적용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판매활동이 시작되었거나
- 생산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판매활동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회사

상장시장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장 예정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최소 유형자산의 순장부금액과 자산화된 사전탐사비용의 최소 금액이 1천억 루피아 (Main Board 상장) 또는 50억 루피아(Development Board)가 되어야 함.
- 한 명 이상의 이사가 과거 7년 이내 광업 분야에 최소 5년의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야 함.
- 상장 예정회사는 관련 부서의 감사를 받은 일정 유보금을 유지하여야 함.
- DGoMC로 부터 발급받은 clean and clear 인증서를 보유함.
- 상장 신청서가 제출되기 이전 최소 3년간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았음.

IDX 규정에 기술되어 있는 기타 요구사항도 첨부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이 발표되기 이전에 지분이 이미 IDX에 상장된 광물 및 석탄 회사는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상기의 이사의 전문 경력 요건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Divestment**

신광업법은 외국 주주들이 그들의 지분을 광산채굴 5년째부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R 23 (as amended by GR 77)에 따르면, 정부는 지하 채굴을 수행하는 IUP-OP와 IUPK-OP 보유자들의 처분 규정을 51%에서 30%까지 낮추고 지하 광산에서의 운용이나 광물 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광업자들에 대해서 처분기간을 광산채굴 10년째까지에서 15년까지로 증가시켰다. 지하 채굴이나 가공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은 여전히 10년내 49%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GR 77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 IUP/IUPK를 보유한 PMDN회사를 취득 시 적용될 최대 지분율은 PMDN이 보유하고 있는 광업 licence의 종류 및 PMDN 기업이 가공 및 정제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광업 Licence	가공 및 정제 활동 여부	외국인 투자자 최대 지분율 (%)
탐사 IUP와 탐사 IUPK	해당사항 없음	75
IUP-OP 와 IUPK-OP	없음	49
IUP-OP 와 IUPK-OP	있음	60
지하에서 채굴을 하는 IUP-OP	해당사항 없음	70

또는 외국인 투자가 광업을 영위하는 100% PMA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외국인 최대 지분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아래의 처분 규정은 해당 규정이 나오기 이전에 설립된 PMA 광업 회사에도 적용된다.

GR 77에 따라 광업 회사에 적용되는 처분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광업 Licence	가공 및 정제 활동 여부	생산연도 - 처분 까지의 연도					
		6년째	7년째	8년째	9년째	10년째	15년째
IUP-OP와 IUPK-OP	없음	20%	30%	37%	44%	51%	요구사항 없음.
IUP-OP와 IUPK-OP	있음	20%	요구사항 없음	요구사항 없음	요구사항 없음	30%	40%
지하에서 채굴 하는 IUP-OP와 IUPK-OP	해당사항 없음	20%	요구사항 없음	요구사항 없음	요구사항 없음	25%	30%
지하와 노천에서 채굴하는 IUP-OP와 IUPK-OP	해당사항 없음	20%	요구사항 없음	25%	요구사항 없음	30%	요구사항 없음.

지분 매각의 대상은 중앙정부, 주정부, 시/군정부, 국유기업, 국내 개인사업체 순이다.

상기 규정 외에도 GR 77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 가공 및 정제 IUP-OP Licence가 있는 회사(즉, 광업허가권 이외)는 상기의 처분 규정에서 제외됨.
- IUP-OP나 IUPK-O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인도네시아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하는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주주들에게 먼저 신주인수를 제안하여야 함.

- IDX에 지분이 상장되어 있는 광업 회사는 최대 20%까지 국내 투자자들에 의해 보유되는 것으로 간주됨 – 신규정으로 인해 상장회사의 "Local" 회사로의 구분에 대한 논쟁이 커짐.

경과적인 지분 처분 규정은 GR 77이 공표되기 이전에 5년 이내의 생산연도의 CoW, CCoW 보유자들은 GR 77의 처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R 77의 공표 이전에 이미 생산연도가 5년 이상된 CoW, CCoW 보유자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분 처분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15년 10월 15일까지 20%의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 GR 77 공표 이후 5년 이내에 CoW와 CCoW 보유자는 지분 처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즉, 2019년 10월 15일까지).

기타 투자 지분 처분 조항이 현재 CoW/CCoW 보유자들에게 적용되진 않지만, CoW/CCoW 계약이 만료되면 갠신 시 투자 지분 처분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 **Additional requirements on conversion of capital investment status**

GR 77은 PMDN기업의 PMA기업으로의 전환이나 PMA기업의 주주로 전환에 대하여 요구사항을 재 규정하고 있다(이전에는 PerMen 27에서 다루어졌다).

GR 77에는 타임라인, 처분가격, 승인 과정, 지불방법 등과 같은 지분 처분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있다. PMDN기업에서 PMA기업으로의 전환이나 역으로의 전환은 장관의 승인이 요구된다. 그리고 모든 IUP 보유자(운송 및 판매 IUP-OP와 가공 및 정제 IUP-OP 포함)는 장관의 승인을 득하기 전까지 투자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 **Divestment via IPO**

인도네시아 자본 시장을 통한 지분 처분은 이 지분 처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GR 77의 IDX에 상장된 광업회사에 관한 규정 참조).

#### **Pricing of shares subject to divestment**

지분 처분 가격은 탐사의 시작에서 지분을 처분하는 시점까지의 투자금액에서 다음을 차감한 "대체원가"에 근거한다.

- 물가상승에 의해 조정된 감가상각/감모상각 누계액
- 지분 처분 연도말 시점의 금융부채

상기의 지분 처분 가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최대 가격은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에 제시됨.
- 최저 가격은 국영기업, 지역 소유의 기업, 인도네시아 기업에 제시됨.

지분 처분 가격은 독립적인 평가사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최소한 채굴 가능한 자원을 가진 IUP)들은 상기 매카니즘에 따른 대체원가의 시장가격보다도 낮을 것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Changes in capital investment

IUP나 IUPK (운송 및 판매 IUP-OP 와 가공 및 정제 IUP-OP포함) 지분 투자 구조의 모든 변경은 장관이나 주지사, 시장/군수의 승인을 요한다(IUP 발급 권한에 따라 다름). 승인이 요구되는 변경은 다음과 같다.

- a. 투자와 자금 조달 원천
- b. PMA에서 PMDN 또는 PMDN에서 PMA로의 변경
- c. 정관
- d.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 e. 주주

PerMen 27은 상기 사항에 대한 변경 요청 시 작성하여야 할 form을 규정하고 있다.

## Transitional provisions

경과 규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이미 49% 이상의 외국인 지분율이 있는 PMA로 전환된 IUP-OP 기업도 여전히 GR 77의 지분 처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분 처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분율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는 자금 조달이 인도네시아 투자자나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광업 개발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 b. 지분 처분 절차와 처분될 지분의 가격은 CoW/CCoW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 대부분의 CoW는 지분 처분이 지분의 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허용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CoW/CCoW 규정과 상충된다. 또한 CoW/CCoW 기업들은 CoW에 있는 조항들이 GR 77과 PerMen 27에 앞선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CoW/CCoW가 재협상 시 또는 IUPK-OP로 간신될 때 새로운 지분 처분 가격 조항을 포함하고자 하고 있다.

## Mandatory In-country Processing

신광업법 하에서는, IUP/IUPK 보유자들은 광물과 석탄의 부가가치를 위한 가공 및 정제 과정을 인도네시아 내에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014년 1월 11일, FR 23/2010과 GR 24/2012의 개정으로 GR No.1/2014가 공표되었다. 석탄의 경우, 이 규정에서의 "가공" 공정은 다음과 같은 활동이다.

- 석탄 분쇄
- 성형탄
- 배합
- 선탄
- 석탄 액화
- 석탄 가스화
- 석탄 Upgrading
- Coal Water Mixing

국내 가공 의무화의 주요사항과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및 암석의 수출은 다음의 규정에서 정해져 있다.

- a. MoEMR Regulation No.1/2014 (PerMen 1) as amended by MoEMR Regulation No. 8/2015 (PerMen 8)
- b. MoF Regulation No.6/2014 (PMK 6)
- c. MoF Regulation No.153/PMK.011/2014 (PMK 153/2014)
- d. MoT Regulation No.04/M-DAG/PER/1/2014 (PerMenDag 4)

- e. MoT Regulation No.39/M-DAG/PER/1/2014 (PerMenDag 39) and
- f. MoT Regulation No.119/M-DAG/PER/12/2015 (PerMenDag 119).

상기 규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전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그리고 암석에 대한 부가가치 증가 의무화.
2. 부가가치의 증가는 다음 활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금속 광물의 가공 및 정제
  - 비금속 광물의 가공
  - 암석의 가공
3. 가공은 농축 금속 광물질로의 전환이나 암석 정제와 같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의 변화 없이 광물이나 암석의 질을 증가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됨.
4. 정제는 금속화나 합금과 같이 제품 생산 목적으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통해 추출과정이나 광물의 순도를 증가시켜 금속 광물의 질을 증가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됨.
5.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및 암석의 수출 이전 국내 가공 및 정제에 대한 최소 단계에 대한 규정은 생산물별로 PerMen 8의 별첨 I,II,III에 각각 기술되어 있음. 그러나 최소 가공 및 정제 과정 의무화 규정은 MoEMR을 대표한 DGoMC의 추천서와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의 승인이 있다면 R&D 목적의 광물 수출에는 적용되지 않음.
6. PerMen 1은 광물의 두 가지 타입을 규정하고 있음. Type 1에는 구리, 철광석, 망간, 납, 아연, 티탄철광, 티타늄이 포함됨. Type 1의 광물은 이전 규정에서 요구된 최소 가공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농축물로 수출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완화 규정은 PerMen 1의 발효일부터 3년 동안만(즉, 2017년 1월 11일까지) 적용 가능하며 정제 시설 건설(또는 공동 건설)에 대한 의무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수출세의 부과 대상이 됨. Type 2의 광물은 니켈, 보크사이트, 주석, 금, 은, 크롬으로 구성되어 있음. Type 2의 광물은 첫 번째 타입의 광물에 비해 수출 이전에 훨씬 높은 수준의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함. Type 2의 광물에는 수출세는 부과되지 않음.
7. Type 1 광물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수출세 세율과 최소 가공 요건은 다음과 같음.

광물	수출세 세율					
	2014		2015		2016~2017	
	1.12~7.31	8.1~12.31	1.12~6.30	7.1~12.31	2016.1.12~2016.6.30	2016.7.1~2017.1.12
1 구리 농축물 (15% 이상의 Cu)	25%	25%	35%	40%	50%	60%
철 농축물 (62% 이상의 Fe)	20%	20%	30%	40%	50%	60%
철 농축물 (51% 이상의 Fe 와 10% 이상의 $Al_2O_3 + SiO_2$ )	20%	20%	30%	40%	50%	60%
황철광석 (62% 이상의 Fe)	NA	20%	30%	40%	50%	60%

광물	수출세 세율						
	2014		2015		2016~2017		
	1.12~7.31	8.1~12.31	1.12~6.30	7.1~12.31	2016.1.12~2016.6.30	2016.7.1~2017.1.12	
3 망간 농축물 (49% 이상의 Mn)	20%	20%	30%	40%	50%	60%	
4 납 농축물 (57% 이상의 Pb)	20%	20%	30%	40%	50%	60%	
5 아연 농축물 (52% 이상의 Zn)	20%	20%	30%	40%	50%	60%	
6 티탄 철광 농축물 (58% 이상의 Iron sand와 56% 이상의 pellet)	20%	20%	30%	40%	50%	60%	
6 티타늄 농축물 (58% 이상의 iron sand와 56% 이상의 pellet)	20%	20%	30%	40%	50%	60%	

8. 제련소를 건설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수출세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세율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7년 1월 12일까지 적용됨.

- 제련소 건설 진행률이 7.5%(프로젝트 금액의 5%의 "seriousness guarantee" 예치 포함)  
이하인 기업: 7.5%
- 제련소 건설 진행률이 7.5%에서 30% 이하인 기업: 5%
- 제련소 건설 진행률이 30% 이상인 기업: 0%

Seriousness Guarantee Funds는 전체 투자금액(새로운 프로젝트의 경우)의 또는 잔여 미투자금액(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된 경우)의 5%임. 이 펀드는 공사 진행에 따라 매년 증가될 수 있으나, 공사 진행률이 매 6개월마다 목표치의 최소 60%를 달성하여야 함. 3년 연속으로 목표 달성을 실패하면 제련소를 짓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부는 펀드를 국영 기업으로 전용하고 해당 기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수출세(현재 20%에서 2016년 하반기까지 60%까지)가 부과됨. 이와 같이 정부는 수출세 혜택으로 제련소 건설을 권장하고 있음.

제련소 건설 진행률은 MoEMR에서 발급하는 수출 추천서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수출세 부과 시 고려가 됨.

9. 수출 이전에 갖추어져야 할 행정적 절차에는 MoEMR을 대표한 DGoMC의 추천서를 받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생산품 정제 계획의 진행을 고려하여 6개월간 검토됨. 추천서는 무역부 ("MoT")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는 것의 전제조건임.
10. 가공 및 정제된 광업 생산물의 수출업자 등록(Eksportir Terdaftar, "ET")을 통해 수출할 수 있는 가공 및 정제된 광물과 암석의 종류 및 수출할 수 없는 광석과 미완전 가공 광물 및 암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분류	수출세	허용된 수출기간	ET *)
1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소 가공 및 정제 공정 요건을 갖춘 광물 및 암석	없음	제한 없음	요구됨.
2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소 가공 및 정제 공정 요건 중 일부를 갖춘 광물	적용됨	2017년 1월 12일까지 가능함. 또한 MoT의 수출허가가 필요함.	요구됨.
3 수출할 수 없는 광업 생산물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ET는 3년간 유효함 (MoEMR을 대표한 DGoMC의 추천서가 요구됨)

\*\*) 무역부(MoT) 승인은 6개월간 유효하며(연장 가능함), 별도의 MoEMR을 대표한 DGoMC의 추천서가 필요함.

11. 석탄 및 석탄 생상품의 수출은 오직 등록된 석탄 수출업자("ET Batubara")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수출 절차와 ET Batubara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ET Produk Pertambangan과 유사함.
12. IUP 보유자는 다른 IUP-OP 보유자와 다음의 가공 및 정제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원자재, 광석, 농축물의 거래
  - 장관이나 군수(프로젝트의 위치와 발급 기관에 따라)의 요청에 따른 광물의 가공 및 정제에 대한 공동 작업

이 국내 가공 의무화 규정 및 수출세 도입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정부와 광업부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CoW 보유자들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CoW가 신광업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들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와 앞으로의 인도네시아 국내외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특정 형태의 광물 가공에 대한 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국내의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 방류 정제 시설이 불충분하며 수출세가 광업분야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 In-Country Refining Facilities

광업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제련소를 짓는 경우, 가공/정제 시설 및 관련된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투자가 유의하여야 할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a. 가공 및 정제 시설과 기반 시설의 소유와 관련하여 IUP-O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즉, 광업 회사)가 제련소를 소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별도의 가공 및 정제 IUP-O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제련소를 소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 b. 만약 별도의 회사가 설립된다면, 광업 회사와는 어떠한 약정을 가질 것인지 여부. 트레이딩 및 가공 서비스 계약이 유리할지 여부
- c. Tax holiday나 수입세 면제와 같은 조세 편익이 있는지 여부
- d.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세제에 대한 검토
- e. 최대의 절세를 위한 자금조달
- f. 주주(광업 회사, 지주 회사, 재무적 투자자, 국내 투자자, 해외 투자자)와의 협력을 위한 최적의 모델

## Letter of Credit (“L/C”) Requirement for Export of Mineral Resources

MoT 규정 No.04/M-DAG/PER/1/2015 (PerMenDag 04/2015)에 따라 광업 생산물(니켈 산화물, 금 농축물, 금괴, 연납 주석, 동조, 등)의 수출시 L/C를 사용하여야 한다.

L/C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a. L/C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은 글로벌 시장 가격보다 낮을 수 없음.
- b. 지불은 국내의 외국환 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정책 은행).
- c. L/C 매카니즘은 수출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함.
- d. L/C 문서화는 MoT에 의해 선임된 측량사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함.
- e. L/C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수출이 허용되지 않음.

추가적인 시행령은 DGFT에 의해 공표될 예정이다.

광물 생산물 수출자는 수출/수입 활동의 중단을 포함한 불필요한 재재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와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사간 매출, 비판매용 수출, 중개 회사를 통한 수출, 신탁 계약을 통한 수출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2015년 3월 30일 MoT는 규정 No.26/M-DAG/PER/3/2015 (“PerMenDag 26/2015”)를 발표하였다. 이는 L/C 조건을 이행할 없는 수출자에 대해서 이 규정의 적용을 이연시키는 규정이다(하지만 이후에 MoT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연이 철회될 경우 가산세 규정이 있음). LC결제 규정의 이연에 대하여 MoT로부터의 승인은 다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 a. 이연 규정은 PerMenDag 04/2015이 발효되기 이전에 등록된 수출자와 해외 고객간의 특정 상품의 수출 계약에 적용된다(예를 들어, Telegraphic Transfer 또는 L/C를 사용하는지 여부).
- b. 특정기간 이내에 L/C를 사용하여 결제 할 수 있는 능력
- c. 상기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인지세 확인서

상기 문서에 대한 사후적인 감사는 MoT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기 문서화의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수출이 부질절하게 이루어진다면 L/C term의 이연은 철회되고 가산세 등의 제재도 적용될 수 있다.

L/C는 인도네시아정부 산하의 수출 금융기관(“GoI”)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다.

## Mineral Mining Production Limitation Regulation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석탄과 광물 자원은 재생에너지원이 아니고, 국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충분한 공급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필요 시 석탄 및 광물 생산을 제한시킬 수 있다. 장관, 주지사 및 시장/군수가 생산 제한 규정을 결정할 것이다.

불이행시 경고, 사업 정지, 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Mining Licence 취소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 Mining Support Services

IUP 또는 IUPK 보유자들이 더 이상 모든 활동을 위탁할 수 없으며, 석탄/광물을 직접 채굴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광업 서비스 사업 종류 리스트를 규정하고, 핵심과 비핵심 광업 서비스 사업을 구분한다. 또한, 광업 서비스의 관계사 이용을 제한하고, 지역 사업체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가공은 IUP/IUPK 보유자들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가공 및 정제 IUP-OP Licence 를 가진 회사에 위임하여야 하나, 컨설팅, 계획, 테스트, 운송 등의 활동은 광업 서비스 회사에 맡길 수 있다. PerMen 24에 따르면 IUP 보유자들은 지하 광굴 건설은 터널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광업 서비스 회사에게 위임하거나 광업 서비스 회사와 렌탈 계약서를 통해서 장비를 리스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광업 서비스는 PerMen 28/24의 별첨에 기술되어 있다.

## Classification of Mining Services and Mining Service Companies

IUP/IUPK 보유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회사는 다음과 같은 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Mining Service Business	Non-Core Mining Service
PerMen 28/24 상 광업서비스	광업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Licence: Mining Services Business Licence/ Izin Usaha Jasa Pertambangan ("IUJP")	Licence: Registration Letter/ Surat Keterangan Terdaftar ("SKT")

광산 서비스는 지역회사 또는 인도네시아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PerMen 28/24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 제공업자를 분류하고 있다.

지역회사	Regency/Province에 위치하고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인 소유 회사
인도네시아 회사	인도네시아 법적 회사로서 지분 전체를 인도네시아 국적 소지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나 해외에서 운영되는 회사
기타 회사	인도네시아 법적 회사로, 지분 일부 또는 전체를 외국인이 소유

여기서 '지역'의 의미는 광산회사들이 지역 제품, 지역 하도급 업자, 지역의 노동력을 이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Restriction on the Use of Affiliates/Subsidiaries

IUP/IUPK 보유자가 광업 서비스 사업의 하도급 회사로 자회사와 관계회사를 이용하려면, DGoMC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자회사와 관계회사는 IUP/IUPK 보유자가 직접 지분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2010년 5월 10일 DGoMC Regulation no. 376.k/30/DJB/2010에 의거).

- IUP/IUPK 보유자가 광산 서비스 관계회사 지분 25%이상 소유 시
- IUP/IUPK 보유자가 광업 서비스 관계회사에 직접 재무와 운영 부분을 통제하며 지분 50% 이상 소유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IUP/IUPK 보유자가 광산 서비스 관계회사의 재무와 운영 이사나 이와 유사한 직급의 인원을 임명 또는 교체할 권한이 있는 경우
- 군내 또는 주 내에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없는 경우 및 IUP/IUPK 보유자가 입찰공고를 냈으나 인도네시아 서비스 회사가 기술적 또는 재무상태를 고려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계회사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또한, IUP/IUPK 보유자는 관계회사 이용 시 가격책정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 Prohibition on receiving any fees from Mining Services Company

IUP/IUPK 보유자는 광산 서비스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는 Mining Licence 보유자가 모든 광업 운영을 제 3자에게 맡기고 이익이나 석탄/광물 생산량을 기초로 한 보상을 제 3 자에게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 Transitional Provisions for existing Mining Services Arrangements

PerMen 28 제정 이전에 광산회사가 이미 광산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PerMen 28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즉, 30 September 2012).

기존의 모든 IUJP들은 만료일까지 유효하지만, PerMen 28/24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Fiscal Regime

신광업법에는 세금 또는 다른 재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IUP/IUPK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현행법에 따른 세금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IUP/IUPK와 재정 조항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부 CoWs/CCoWs에서 특별법 (lex Specialis)이 아직 유효하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세부내용은 없으며 규정의 적용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IUP/IUPK 조항이 세법에 우선하는 것 또한 실무상 적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Royalties

모든 IUP/IUPK 보유자들은 생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광업 규모, 생산 레벨, 광업 원자재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석탄과 광물 종류에 따라 판매 수익금에 대한 적용 비율이 달라진다.

IUPK 보유자들은 순이익의 10%를 로열티로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로열티 중 40%를 받으며, 나머지는 관련 주와 군이 나눠 가진다. 순이익을 기초로 추가적인 로열티가 결정된 이후부터, 정부는 IUPK의 자본지출과 광업 운영비에 대해서 더 많은 감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인도네시아 원자재의 생산 로열티 비율은 다음과 같다. CoW/CCoW/CCA (Coal Cooperation Agreement)의 경우, 관련 계약서를 참조해야 한다.

IUP Royalty Rates	
Commodity	Production royalty rate
Coal	
- Open Pit	3% - 7%
- Underground	2% - 6%
Nickel	4% - 5%
Zinc	3%
Tin	3%
Copper	4%
Iron	3%
Gold	3.75%
Silver	3.25%
Iron Sand	3.75%
Bauxite	3.75%

정부는 IUP에 대한 생산로열티를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석탄의 경우 현재로열티 세율이 CCoW(13.5%)에 비하여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로열티 세율 증가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규정은 아직까지 없다.

## Transfer Restrictions

IUP/IUPK를 타인에 양도하는 것은 신광업법에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령(GR 24)에 따르면 이미 IUP/IUPKs를 보유한 회사가 최소 51%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게는 양도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모든 IUP/IUPKs 보유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IUP/IUPKs 보유법인이 51%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게만 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 규정은 GR 23의 경과 규정에 따라 다수의 IUP/IUPK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IUP/IUPK를 재배분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해당 양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신광업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IUP/IUPK 회사의 지분 양도는 일정 탐사 단계 이후에 가능하다 (적절 단계는 GR에서 규정할 것임). 양도는 관련 정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입법 조항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신광업법은 인도네시아 장외거래의 지분 양도는 규제하지 않는다.

## Reclamation and Mine Closure Guarantees

2010년 12월 20일, 정부는 탐사사업허가 및 채광사업허가에 대한 개간(Reclamation) 및 폐광 후 활동 관련 Government Regulation No.78/2010 ("GR No.78")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2008년 5월 29일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발행한 Ministerial Regulation No.18/2008의 업데이트이다. 2014년 2월 29일, 에너지광물자원부는 GR 78의 시행령인 Regulation No.7/2014 (PerMen 7/2014)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개간 및 폐광 후 활동 준비를 위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다루고 있다.

IUP-Exploration 보유자의 경우, 다른 조건과 함께 탐사 작업 계획 및 예산 제출시, Reclamation 계획도 포함시켜야 하며, 국유 은행에 Reclamation 보증에 대한 일정금액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탐사 단계에서의 Reclamation 계획은 실제 탐사 단계가 착수되기 이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IUP-Exploration 보유자는 IUP-OP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생산

단계의 Reclamation 계획과 폐광 후 활동의 계획을 준비하여야 하며 5년간의 계획(광구의 수명이 5년 이내라면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IUP-Production Operation 보유자의 경우 다른 조건들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1. Reclamation 5개년 계획
2. 폐광 계획
3. Reclamation 보증에 대한 공동 예금 계좌, 정기 예금 국유 은행 예치, 은행 보증 및 (일정 조건을 만족할 시)회계상 총당부채
4. 폐광 보증(Post-Mining Guarantee)을 위한 정기 예금 국유 은행 예치

Reclamation이나 폐광보증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IUP 보유자는 Reclamation과 폐광 후 활동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PerMen 7/2014는 Reclamation과 폐광 후 활동 report 작성을 위한 절차를 정하였다.

경과 규정 GR No.78과 PerMen 7/2014는 CoW/CCoW 보유자 또한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Reclamation 및 광산폐쇄 보증은 장관, 주지사, 시장/군수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다.

## **Penal Provisions**

신광업법은 IUP/IUPK 보유자의 불법 채굴과 같은 위배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법률 위반 시, IUP/IUPK 취소와 구금을 포함한 행정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Dispute Resolution**

IUPs/IUPKs에 대한 분쟁은 법정 절차와 현행법에 따라서 국내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 **Further Implementing Regulations**

신광업법은 모든 규정 적용을 2010년 1월 11일 제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필수 시행규칙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Transitional Provisions**

### **Divestment**

투자 지분 처분에 대한 경과 규정은 상기의 'Divestment'에 기술하였다.

### **KPs**

기존의 모든 KPs는 GR 23을 기반으로 2010년 4월 30일까지 IUP Licence로 전환하도록 되어있다. 신광업법에는 KPs의 전환에 대한 경과규정은 없다. 전환 자체는 비교적 쉬운 작업이지만, 시행규칙(특히 PerMen 28)의 영향으로 인해 신광업법 체제하에서 과거 광업 서비스 구조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GR 23에 의하면, 다수의 KP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IUP의 전환 이 후에도 신광업법 하에 KP를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다.

### CoWs/CCoWs/CCAs

기존의 모든 CoWs/CCoWs/CCAs ("Contracts")는 만료일까지 지속되며, 입찰 없이 연장될 수 있다(계약상의 추가연장도 가능함).

그러나 연장된 licence는 CoW 체제가 아닌, IUPK 시스템에 의해서 승인된다. 만약 licence 가 한번 연장되었다면 두 번째 연장은 입찰 없이 진행될 것이다. 두 연장 모두 회사가 에너지광물자원부에 계약 만기일로부터 2년 ~ 6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IUPK를 발급하기 전에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관련 광업 지역인 WIUPK OP에 대한 승인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광업 지역은 입찰로 진행된다.

IUPK OP 연장 신청서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GR 77에 기술되어 있다.

기존 contracts의 내용은 유효하지만, 법 제정 5년 안에 광석의 국내 가공 및 정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미 사업활동을 시작한 contract 보유자는 신광업법 제정 1년 이내에 계약한 지역 전체에 대한 광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신광업법에 의해 계약 지역이 IUPs에게 허가된 지역만큼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신광업법은 1년이내에 기존 계약 조항들을 정부 소득 관련 조항(정의 되어있진 않지만, 정부 부과금과 로열티와 같은 세외 정부 부과금으로 추정)을 제외하고는 신광업법 조항을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신광업법 공표 이후 현재까지 5년이 넘게 정부와 contract 보유자간에 개정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신광업법의 어떤 조항이 기존 contract 보유자들에게 적용될지는 불확실 하지만 투자처분 의무, 광업 지역 re-sizing, 생산 기간 축소, 관련 광업 도급업자 이용 금지와 같은 조항들이 신광업법과의 일치를 위하여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이 contract 보유자가 계약을 갱신할 시 정부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신광업법의 경과 규정이 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며 법률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부분이다. 불행히도, 결과는 2개의 상충되는 조항으로 나올 것이며, 이는 정부 세수 측면과 기존 contract 권리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안이 contract을 체결한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항이며, 경과규정 관련 정부의 설명이 명확해 지지 않는 한, 기존 계약자들의 추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정부는 2012년 1월 10일 발행된 Presidential Decree No. 3/2012에 의거 대다수의 CoW/CCoW 보유자들과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Coordinating Minister for Economics Affair에서 책임자를 선정하고 여러 장관을 축으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하였으며, 기존의 계약을 신광업법에 준수할 수 있도록 협상을 시작하였다. 초점은 광구 규모, 세금 및 로열티, 광업 서비스 도급업자의 사용, 가격 벤치마크, 광구 폐쇄 및 개간, 국내 가공, 최소 투자회수 요건 등이다.



3

## 광물 개발 협정 (CoW)



Photo source : PT Bukit Asam (Persero) Tbk

## **General Overview and Commercial Terms**

### **Contracts of Work (“CoW”)**

광업 비즈니스를 규제하기 위한 광물개발협정(“CoW”)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현대 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76년에 도입된 CoW 시스템은 지난 40년 동안 인도네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변화하는 상황들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현대화되었으며, 현재까지 7세대의 CoW가 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신광업법은 새로운 CoW Licensing 체제를 규정하지 않는다. 기존의 CoW는 약정된 만기날짜까지 유효하며, 만기가 지나면 새로운 IUPK Licensing 방식으로 연장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될 내용은 신광업법 이전의 협약된 CoW, 즉 신광업법에 맞추기 위한 정부의 재협상에 따른 수정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CoW에만 적용된다. 새로운 광업 활동은 신광업법의 IUP 체제에서만 운영될 수 있다.

CoW는 에너지광물자원부(“MoEMR”) Decision Letter No. 1614/2004에 의해 규제된다. 본질적으로 CoW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회사와의 종합계약이다. 회사는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나, 만약 100% 외국인 소유라면 후에 의무적으로 처분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실무상으로는 인도네시아인이 대부분 CoW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CoW는 탐사, 생산 전 개발, 생산, 폐광을 포함한 광업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특정 지리적 지역(the “Contract Area”)에 적용된다.

CoW회사는 오일, 가스, 석탄, 우라늄 이외 CoW 지역 안의 모든 광산업을 위한 유일한 사업자이며, 탐사, 개발, 생산, 정제, 가공, 보관, 운송, 판매와 같은 활동 등을 통제, 관리할 책임을 진다.

CoW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기간 (years)	연장 가능기간 <sup>1</sup>
기초 조사 <sup>2</sup>	1	6개월 - 1년
탐사 <sup>2</sup>	3	1 - 2년
사업타당성 조사	1	1
건설	3	-
생산	30	20년 혹은 정부가 허가한 기간

1) CoW 세대에 따라 다름

2) 1세대의 경우, 기초조사부터 사업타당성 조사까지의 최장기간은 18개월이고, 6개월 연장 가능하였음.

CoW에서의 중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출 의무; 수출입 기관; 마케팅; 재정적 의무; 보고서 요구사항; 기록, 조사 및 작업 프로그램; 인도네시아인의 고용 및 트레이닝; 인도네시아 공급자 우대; 환경의 관리와 보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지역 협력; 지역주민과 지역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

이러한 주요 사항들을 계약서상 적절하게 기재하여야 정부와 업계에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CoW는 모든 세금, 로열티, 다른 재정적 요금의 내용을 다루며, 계약 지역 내의 확정채굴료; 생산로열티; 미지급 법인세; 고용인의 개인 소득세; 배당, 이자, 임차료, 로열티등에 대한 원천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수입관세;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의 내용이 포함된다.

## Coal Co-Operation Agreements (“CCA”) and Coal Contracts of Work (“CCoW”)

CCoWs는 과거 에너지광물자원부 Decision Letter No. 1614/2004에 따라 규제되었다. 1997년 11월 이후, 석탄광산업은 CoW 구조를 통해 일반적인 광산업에 가까워졌다. 두 세대의 CCAs(1세대와 2세대 Contracts)와 한 세대의 CCoW(일반적으로 3세대 CCoW로 여겨지는)가 있다.

CCA 1세대는 인도네시아 국유 광산 기업인 PT Tambang Batubara Bukit Asam (현, PT Bukit Asam Tbk or “PTBA”)과 국영기업 및 사업자들 사이에서 맺어진 Principle Regulation for Coal Co-operation Agreement 와 관련된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No.49/1981, 1981년 10월 28일 제정)에 의해 규정되었다.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No.49/1981)은 1993년 2월 27일 2세대를 규정하는 Presidential Decree No. 21/1993로 개정되었다. CCoW 3세대는 Presidential Decree No. 75/1996에 따라 2006년 9월 25일에 발효되었다.

### Coal Co-operation Agreements

CCA와 CoW 시스템의 주요 차이점은 CCA의 경우 외국의 광산 회사들이 인도네시아 국유 탄광회사(PTBA)에게 도급업자(Contractor)로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법이 제정된 이후, CCAs는 CCAs에 따른 PTBA의 권리 및 의무를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인 에너지광물자원부(MoEMR)로 양도하도록 개정되었다.

CCA에 의해 석탄 도급업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양의 86.5%를 소유할 수 있으며, 광산 탐사, 개발, 생산관련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과거 PTBA)는 나머지 생산량인 13.5%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1996년 9월 25일에 제정된 Presidential Decree No. 75/1996에 의하면, 도급업자는 판매비를 공제한 판매금액의 13.5%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정부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CCA 1세대의 경우, 석탄 도급업자들은 구매한 장비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권을 보유하고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 장비는 인도네시아 정부(과거 PTBA)에 귀속되었다. CCA와 CCoW의 2, 3세대의 경우, 도급업자가 구매한 장비들은 도급업자의 소유물로 유지된다.

CCA 1세대에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주주들은 인도네시아 국유기업 및 회사에 지분을 매각하여야 하며, 운영 10년 후에는 외국 주주들의 회사 지분이 최대 49%까지 감소된다.

### Coal Contracts of Work

CCoW하에서 광산회사는 사실상 석탄생산의 권리를 100% 소유하고 있었으나, 매출의 13.5%를 로열티로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지불 해야 한다.

CCA와 CCoW의 단계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계	기간 (years)	연장 가능기간 <sup>1</sup>
기초 조사	1	1년
탐사	3	3세대는 2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다른 세대에는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음
사업 타당성 조사	1	3세대는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다른 세대에는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음

단계	기간 (years)	연장 가능기간 <sup>1</sup>
건설	3	-
생산	30	-

## Fiscal Regime under CoW, CCoW and CCAs

CCA 2세대를 제외한 다른 모든 CoW/CCoW/CCA("Contract")로 세대들은 모두 계약이 체결되었던 당시의 세법 및 다른 법률과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과거 법 규정들이 현재 광산 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전 세대 Contract와 관련된 광산 사업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는 반드시 이러한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전 세대들의 contract에는 외국 주주들의 투자 처분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 Pre-Contract of Work Expenses

Contract 회사의 주주들은 법인설립 이전에 상당한 지출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은 현 주주로부터 contract 회사에게 법인설립 이전의 비용을 이연자산으로 이전시킬 수 있으며, 생산 시작시점부터 상각될 것이다. 이러한 비용들은 MoEMR와 DGT (Director General of Taxation)의 승인 및 공인 회계사에 의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

### Exploration and Development

탐사 및 개발 단계는 계약 지역(Contract Area)의 포기/양도(Relinquishment)를 위한 의사결정 요소와 유사하다. 이 섹션은 기초 조사, 탐사, 사업 타당성 조사, 건설단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Contract을 체결할 때, MoEMR 은행 계좌에 보증금을 US Dollar로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다음의 사항들이 완료된 후에 환급 받을 수 있다.

- 기초조사 기간이 끝났을 경우(50%)
- 탐사 단계 완료 후, 12개월 안에 지질도(Geological Map)를 Ministry에 제출한 경우 (50%).

7세대 CoW 또는 3세대 CCoW의 경우, 보증금은 다음의 사항들이 완료된 후에 환급 받을 수 있다.

- 기초 조사 기간이 끝났을 경우(25%)
- 탐사 첫해의 경우 (25%)
- 탐사 단계 완료 후, 12개월 안에 지질도(Geological Map)을 Ministry에 제출할 경우(50%)

생산준비 단계 중에는 Contract을 체결한 모든 회사들은 분기별로 경과보고를 MoEMR에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 하에 모든 회사들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재무 요구사항 및 세부사항들을 MoEMR에 보고해야 한다.

Contract을 체결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환경복원, 인도네시아 국민의 고용 및 교육, 인도네시아 공급자들의 우선적 사용, 지역사회를 위한 인프라 제공에 대하여 의무가 있다.

또한 회사는 Contrac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CoW	CCA/CCoW
<p><b>기초 조사 단계</b> 회사는 기초 조사가 진행될 동안 합의된 금액을 소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종료 시점에 회사는 반드시 사용내역 및 지출금액을 보고해야 하며, 최소 Contract Area의 25%를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한다.</p>	<p><b>기초 조사 단계</b> 회사는 기초 조사가 진행될 동안 합의된 금액을 소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종료 시점에 회사는 반드시 사용내역 및 지출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2세대 및 3세대의 경우, 최소 Contract Area의 25%를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하고, 1세대의 경우 40%를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한다.</p>
<p><b>탐사 단계</b> 회사는 탐사 활동에 대하여 합의된 연간 금액을 소비할 의무가 있다. 탐사 시작 시, 회사는 연간 프로그램 및 예산안을 MoEMR에 제출해야 한다.</p> <p>회사는 탐사 종료시점에 MoEMR에 다음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질(Geological)과 금속(Metallurgical) 조사결과 요약 및 관련된 모든 데이터</li> <li>- Contract Area의 지질도(Geological Map)</li> </ul> <p>회사는 탐사 2주년 혹은 그 이전에 원시계약에 표기된 Contract Area의 50% 미만으로 축소해야 한다.</p>	<p><b>탐사 단계</b> 회사는 탐사 활동에 대하여 합의된 연간 금액을 소비할 의무가 있다. 탐사 시작 시, 회사는 연간 프로그램 및 예산안을 MoEMR에 제출해야 한다.</p> <p>회사는 탐사 종료시점에 MoEMR에 다음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릴 구멍, 채취장, 샘플 순도 분석의 사본</li> <li>- Contract Area의 지구 물리학(Geophysical)지도 및 지질도(Geological Map) 사본</li> </ul> <p>3세대의 경우, 회사는 탐사 2주년 혹은 그 이전에 원시계약에 표기된 Contract Area의 25% 미만으로 축소해야 한다. 1세대 및 2세대의 경우, 회사는 탐사 2주년 혹은 그 이전에 원시계약에 표기된 Contract Area의 20~40% 미만으로 축소해야 한다.</p>
<p><b>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b> 사업 타당성 종료 시점에 회사는 반드시 환경 영향 조사를 포함한 조사내용을 MoEMR에 제출하고, 시설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회사는 조사 종료시점에 원시계약에 표기된 Contract Area의 25% 미만으로 축소해야 한다.</p>	<p><b>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b> 사업 타당성 종료 시점에 회사는 반드시 환경 영향 조사를 포함한 조사내용을 MoEMR에 제출해야 하며, 시설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CCoW 3세대 회사는 조사 종료시점에 원시계약에 표기된 Contract Area의 25,000 헥타르 미만으로 축소해야 한다.</p>
<p><b>건설 단계</b> 회사는 관련 시설물을 건설해야 한다.</p>	<p><b>건설 단계</b> 회사는 관련 시설물을 건설해야 한다.</p>
<p><b>확정 채굴료(Dead Rent)</b> CoW 기간 동안, 회사는 확정채굴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CoW의 헥타르 넓이와 단계를 기초로 한 연간금액이다.</p>	<p><b>확정 채굴료(Dead Rent)</b> 계약 기간 동안, 회사는 확정채굴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승인받은 헥타르 넓이와 광업 단계를 기초로 한 연간금액이다.</p>

## **Production**

생산 단계 중 회사는 다음의 개발관련 내용을 MoEMR에게 보고해야 한다.

- 격주 통계 보고서
- 월별 통계 보고서
- 운영 진행상황에 대한 분기 보고서
- 연간 보고서
- 기타 보고서

회사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지만, 국내 수요를 먼저 충족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관계 회사에 판매할 경우 제3자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판매 계약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ontract상 도급업자는 반드시 다음의 보고서들을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월별 통계 보고서
- 운영 진행상황에 대한 분기 보고서
- CCoW 3세대의 경우, 연간 보고서

Contract 회사는 광산 자체를 운영하거나 또는 그 운영을 하청업자에 맡길 수 있으나, 아웃소싱 운영은 Contract에 적용될 수 있는 신광업법 및 PerMen 28/24의 법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단 한 종류의 Contract (CoW, CCA 또는 CCoW)와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광산 그룹은 인도네시아에 광산 회사를 하나 이상 소유하고 있다. 그룹의 간접비는 그룹의 계약 회사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회사를 통해 부담될 수 있다. 이는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무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Other Financial Obligations**

### **Royalties**

로열티는 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실제 생산량 또는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로열티는 일반적인 수출 관리 절차하에서 필요에 따라 선적 전에 정부에 지불되고 있다.

### **Dead Rent and Land and Building Tax**

회사는 Contract에 명시된대로 확정 채굴료, 토지 및 건물 관련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확정 채굴료는 Mining Area의 헥타르 넓이를 기초로 매년 지불되는 비용이다. 부동산세는 특정 세율이 부과된다.

## ***Termination of the Contract***

만약 회사는 Contract 기간 중 언제라도 Contract Area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 계약 포기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같다 (1세대 및 2세대 CCoW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계약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폐쇄 계획서와 관련 서류, 지도, 계획서, 작업계획표, 기술자료 및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회사의 의무사항 총족여부가 MoEMR에게 받아들여지면, Minister는 회사가 서면으로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발행함.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의 의무는 면제됨.

각 단계별 Contract 포기에 따른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모든 재산의 매각, 폐기, 처분은 Contract에 규정된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 a. 기초 조사 및 탐사 기간

- 회사는 6개월 동안 재산을 매각 또는 제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산은 정부의 소유가 됨.
- 회사는 기간 내 수집된 모든 정보를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제공해야 함.

### b. 사업 타당성 조사 기간

- 회사는 Contract Area에 소재한 모든 재산을 시장가격으로 정부에 제공해야 함.
- 회사의 제안은 30일간 유효하며, 만약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90일 안에 협의되어야 함.
- 만약 정부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재산을 6개월 안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에 아무런 보상 없이 정부 소유가 됨.

### c. 건설 기간

- 모든 조건은 '사업 타당성 조사 기간'과 동일함. 하지만, 만약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재산을 12개월 안에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함.

### d. 운영 기간 / Contract 만료 시

- 회사는 Contract Area에 소재한 모든 재산을 시장가격으로 정부에 제공해야 함.
- 제안은 30일간 유효하며, 만약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90일 안에 협의되어야 함.
- 만약 정부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재산을 12개월 안에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에 아무런 보상 없이 정부 소유가 됨.

Contract 포기 시, 도로, 학교, 병원과 같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은 회사에 대한 보상 없이 정부의 소유가 됨.

## **Transfer of Contracts**

### **Purchase and Sale of Direct Interests in the Contract**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CoW/CCA/CCoW 회사들은 계약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이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도회사는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urchase and Sale of Shares in a Contract Company**

Contract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양도할 경우의 어려움으로 인해, contract 소유 회사의 주식 혹은 contract 소유 회사의 모회사 주식 양도를 통해 지분을 간접적으로 양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contract 회사 주주들은 정부의 서면 동의 없이는 운영 시작 시점 이전에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또한 Contract 회사 주주들은 운영 시작 이후에 contract 회사의 주식 양도를 위해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Contract 계약 조건에 의거, 이러한 동의는 불합리하게 보류되거나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

양수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 양도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

- Indonesian Participants
- 주주의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 **Unincorporated Joint Ventures**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Contracts의 지분 일부분을 양도하는 것은 드문 사례이며, MoEMR 과의 협의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인트벤처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 역시 드문 일이다. Contract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 관련 법률에는 조인트벤처에 대한 세법적용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조인트벤처에 관한 세법적용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여 Contract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과 함께 정부와 협의 되어야 하는 수많은 사항들 중 하나이다.

### **Farm-ins**

Contract 및 소득세법에는 Farm-in 관련 일반적인 사항들이 없다. 상업적 측면에서, 광물 자산의 전형적인 Farm-in은 자산에 대한 궁극적인 지분 양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Farm-in 방식 및 조세 사항은 지분 양도의 승인과 함께 Minister가 결정할 것이다. Farm-in은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회사의 지분양도일 경우 좀 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 **Cow and CCoW renegotiation**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9년 신광업법은 기존 광산 계약 (CoW와 CCoWs)의 조건을 신광업법 규정과 부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contracts의 조건을 개정하는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많은 CoW와 CCoW 보유자와 접촉하고 있다.

정부가 CoW/CCoW 보유자와 협상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광산 지역의 규모: 정부는 CoW와 CCoW 보유자들의 추가적인 포기/양도를 통해 토지면적을 신광업법에 따라 발행 된 허가 면적에 근접하도록 하고 있음.
- b. 계약 연장: CoW와 CCoW가 IUPK에 따라 연장됨.
- c. 로열티 금액: 정부는 로열티율을 증가시키도록 제안하고 있음.
- d. 인도네시아에서의 가공 의무: Cow와 CCoW 보유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e. 지분매각: 외국인 주주는 CoW 와 CCoW 회사 지분의 51 %까지 매각하여야 함.
- f. 지역 재화 및 서비스의 이용: 광업 서비스 사업의 하도급에 대하여 계열회사 활용 제한과 지역 회사에 대한 이용 권장함.
- g. 세무 규정(법인소득세율 제외): 세무 규정은 현행 세법 규정에 따름.

2016년 3월까지 정부는 10개의 CoW 소유회사 및 22개의 CCoW 소유회사와 (10개의 2세대 CCoW 및 12개의 3세대 CCoW 소유회사) 변경 계약을 맺었다. 변경된 계약은 MoU에서 합의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반면, 여전히 변경 내용에 합의하지 못한 23개의 CoW와 51개의 CCoW 보유회사가 있다. 현재 정부는 CCoW 1세대 계약의 변경 초안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CoW/CCoW 보유자별로 계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협의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부의 수익이 줄어드는 조항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CoW와 CCoW 최초 세대 보유자들은 세율과 로열티율의 감소없이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신광업법 상 최대 광업가능지역은 기존 CoW와 CCoW 상 지역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도 계약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이다.

신광업법 발표 이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세대 CCoW 보유회사와의 재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까지도 분명하지 않다. 업계는 향후 정부가 업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주기를 기원하며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광업 분야 세제



Photo source : PT Agincourt Resources

## Tax Regime for an IUP/IUPK Company

### General

신광업법상 광업 프로젝트의 조세 인센티브는 IUP/IUPK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한, 현행 법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세법 및 규정 외에서의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IUP/IUPK 보유자에게 현행 세법 및 규정을 적용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특별한 조세편의 (lex specialis)은 IUP/IUPK(이미 발행된 IUPs 포함)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IUP/IUPK 소유 회사는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 번호를 받아야 한다. 납세자 번호는 Nomor Pokok Wajib Pajak ("NPWP")라고 불린다. 또한, IUP/IUPK 회사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포함한 세금 신고를 광업 운영 지역 세무서에 해야한다.

### Corporate Income Tax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정부는 광산 비즈니스의 조세를 감독하는 정부규정(Peraturan Pemerintah)을 발행할 수 있다. 현재 광산 비즈니스 조세에 대한 정부규정은 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한 일반적인 세무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하단의 내용은 광업 투자자들과 관련된 주요 세금 고려사항이다.

### Corporate Income Tax Rate

현행 세법 및 규정의 의하면, 기업은 과세대상 수익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과세대상 수익은 총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2009년 이후의 법인세율은 고정 세율로 과세대상 수익의 25%이다. 인도네시아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5%의 세율 할인이 가능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Income

총소득은 일반적으로 광업 생산품 판매와 광산회사의 영업외수익을 포함한다.

### General Expenses

공제비용은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 유지, 징수 시 발생되고, 일반적으로 1년간 회사 운영으로 기인한 모든 지급금액 또는 미지급금액을 포함한다.

특정 지출(기부금, 직원 복지 비용 등)은 현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일부 광산현장 직원 복지비용은 광산이 원격지에 있고 DGT(국세청)의 승인 하에 공제가 가능하다.

광업 운영 경비는 자재, 서비스 하청(Contracted Service), 보험, 지적재산권 로열티, 공정 비용, 수리 및 유지비 등과 같은 경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경비는 발생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판매관리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하여, 발생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 Exploration and Development Expenses

탐사 및 개발 비용은 캠프 건설, 드릴링, 진입로 공사, 프로젝트 통신시설 등을 포함한다.

현지 탐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가능하며, 공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탐사 및 광산 개발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화 되어야 하며 생산기준이 아닌 지출기준에 따라 상각된다.

## Deprecia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은 자산의 특성과 예상 사용수명에 의해 4가지로 분류된다. 자산 감가상각 비율은 자산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은 일반적으로 4,8,16,20년 기준으로 감가상각되며, 과세 대상자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Amortisation of Intangible Assets

무형자산은 상업활동개시전비용(Pre-operating Cost), 특히, 소유권(Rights), 허가증(Licences) 등을 포함한다. 무형자산은 4,8,16,20년 기준으로 상각되며,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특히, Beneficial Life가 1년 이상인 채굴권 취득 시 발생한 비용은 생산량비례법에 의해 연간 20% 이하로 상각되어야 한다.

## Carried Forward Tax Losses

세무상 결손금은 최고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보통 선입선출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다. 결손금은 소급공제 될 수 없다.

## Reclamation Reserve

회계 목적상, 광산 회사는 광구 계약기간 및 존속기간 종료 시일까지의 환경관리와 개간작업을 위한 복구충당부채(Reclamation Reserve)계정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탐사단계 기간 동안에는 복구충당부채(Reclamation Reserve)는 지역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복구충당부채(Reclamation Reserve)는 현행 에너지/광물자원분야 법/규정에 의해 계산되며 세무상 공제가 가능하다. 실제 원가가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세무상 공제대상이 된다.

## Mine Closure

현행 세법/규정은 폐광비용(광산 인프라, 해체 비용 등)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폐광은 보통 광구 수명 마지막 단계에서 회사가 더 이상 소득을 창출시키지 못할 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절세 계획안이 매우 중요하다. 현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규제는 폐광 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광 충당부채비용은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성이 높다.

## Thin Capitalisation Rule

2015년 9월 9일 재무부는 과소자본과세(Thin Capitalization Limit, 차입금 대비 자기자본 비율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급비용 제한)와 관련한 No.169/PMK 010/2015 (PMK169)를 발표하였다. PMK 169는 201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부채자본비율준수 및 과세자본과세와 관한

규정은 부채와 자본의 비율(DER)을 최대 4:1까지로 제시하고 있다. PMK 169는 별도의 DERO이 적용되는 CCoW/CoW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MK 169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자비용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자본의 잔액이 0이거나 부의 자본이 발생한 경우, 이자비용 전체
- DER을 초과하여 차입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
- DER을 초과하여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소득과 관련한 차입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
- 보고되지 않은 해외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자비용 전체 (추후 DGT 규정으로 더 명확해질 예정)

PMK 169 상 이자비용은 할인, 프리미엄, 차입관련비용, 리스이자료, 보증금과 관련한 보상, 그리고 관련한 외환손실을 포함한다. 회사간 대출에 대한 이자는 현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높은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의 공제에 대해 조사받을 수 있다.

### Non-interest bearing loan

자회사로의 탐사 및 개발단계에 발생한 주주 대여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이전가격 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주로부터의 무이자 차입금은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모회사 또는 계열사가 직접적으로 광업 운영에 관여하였을 시, 해당 지불에 대한 세무상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규모는 비관계회사가 같은 서비스를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지불 금액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국세청(DGT)은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과세대상자는 법인세신고서를 통해 이전가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특정 이전가격 방법론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DGT는 이전가격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감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관계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과세대상자는 이전가격세제의 해당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최근 도입된 광물/석탄 가격 벤치마크의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세무 규정은 불분명하다. 현재 가격 벤치마크는 정부 로열티 계산시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이며, 법인소득세 계산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요 석탄 인덱스는 가격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DGT가 공정가액 결정시 기준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 Bookkeeping in US Dollars

조세목적으로, PT PMA회사(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는 US Dollar과 영어로 기장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US Dollar로 기장하기 위해서는 설립 이후 3개월 이내에 DGT에 신청하거나, 또는 US Dollar로 기장하고자 하는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최근, 적합한 기능통화를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IFRS 도입으로 인해 PT PMAs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세법상의 통화로 Rupiah 대신 다른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할 수 있으며, Rupiah 대신 US Dollar로 장부기장을 할 수 있다.

세무상 장부기장은 Rupiah 이외에는 US Dollar만 가능하다.

### Article 22 Income Tax Collections

2015년 6월 9일 재무부는 Article 22의 소득세가 적용되는 거래와 관련한 No.107/PMK 010/2015 (PMK 107)을 발표하였다. PMK 107은 2015년 8월 8일부터 유효하다.

PMK 107은 IU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또는 개인)으로부터 석탄을 매입할 때 매입 당시의 매입가격에 1.5%의 Article 22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PMK 107은 또한 IUP 보유 회사가 석탄과 광물의 수출할 시에도 1.5%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출시 송금하여야 함).

또한 금괴의 판매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나 보석수출업자에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0.45%의 Article 22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금 생산업자에게 징수된다.

Article 22 소득세는 선급법인세를 구성한다(선납에 따른 현금흐름에만 영향을 미침).

### Income Tax Facilities

#### Tax Allowance

정부는 GR No.18/2015 ("GR 18")와 재무부 규정 No.89/PMK.010/2015를 발표하면서 몇 가지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2016년 4월 15일 정부는 GR No.9/2016("GR 9")를 발표하여 GR 18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분야와 지역 내 조세 인센티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제시하였다. GR9는 2016년 5월 9월부터 유효하며 광업가능지역에 대한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 조세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 순 과세소득에서 적격자산 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5%씩 6년간 공제가 가능함. 해당 투자자산은 특정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매각될 수 없음.
- 세무상의 가속 상각이 가능함
- 비거주자로의 배당과 관련한 원천세를 10% 적용함
-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함

광업 분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 시, Tax Incentives(조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기초 철강 제조
- 금과 은의 가공 및 정제
- 특정 활동, 철광석, 우라늄, 토륨, 주석, 납, 구리 알루미늄 아연, 망간, 니켈 가공 및 정제 공정
- 광산지역에서의 석탄가스화 공정
- 액화연료를 위한 석탄의 사용

구리, 은 및 금의 가공 및 정제 이외에 이러한 소득세 인센티브는 Java 외 지역에서의 활동에만 적용된다.

GR 9에서는 비즈니스 영역의 규모, 인도네시아 노동자수와 같은 투자 가치와 관련하여 지정된 사업분야와 지역에 대한 세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세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장관령에 따라 상세 조건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GR 18 as amended by GT 9에서는 이러한 조세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납세자들은 통합경제개발구역(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KAPET)에서의 조세편익이나 Tax Holidays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Tax Holiday

정부는 재무부 규정 No.159/PMK.010/2015를 통하여 상업생산 후 5-15년간 법인세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Tax Holiday 규정을 도입하였다. 해당 투자가 국익을 위한 투자인 경우 세금감면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광업분야의 경우 세금감면은 upstream 금속산업에만 적용되며, 이러한 세금감면은 2011년 8월 15일 이후에 설립되고 IDR 1조 자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DER 4:1 규정을 준수하고 투자금액의 10%를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많은 제련 회사들이 이러한 Tax Holidays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히 조세감면규정에만 제련회사를 포함하여 제련 산업에 대해 Tax Holidays가 아닌 조세감면규정만을 적용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제련회사를 위한 Tax Holidays 규정은 없다.

### Value Added Tax (“VAT”)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인도는 미리 책정된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VAT 가 적용되며, 현 VAT 세율은 10%이다.

현 VAT법은 Gold Bars, Coal, Natural Resources가 직접적으로 공급되었을 시 VAT가 적용되지 않는다. VAT는 광산 생산품의 공정 레벨에 따라 달라진다. 석탄의 경우, DGT로부터 개별적인 규제를 받으며, 선탄 및 분쇄는 공정에 포함되지 않는다(Briquetting은 예외). 신광업법에 대한 국내 공정 의무화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회사가 Gold Bars, Coal과 같은 비부가세 광산 생산물을 인도할 경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출 및 내수의 매입 VAT는 공제/환급이 되지 않고, 추가비용으로 계산되어 법인소득세 계산시 공제되어어야 한다.

제작 준비단계 시, 회사는 자본재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 준비기간 동안 광산 상품 인도가 없어 매출 VAT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 구매 시 하청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은 VAT 초과지급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VAT 환급은 연말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제작 준비단계 시, 매입세액이 발생되면 자본재(Capital Goods)에 대해서만 월 단위로 환급이 가능하다(제작 준비단계 서비스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 및 환급 불가능).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한지 3년 이내(5년까지 연장 가능)에 생산을 못할 경우(VAT 과세 대상 재화/용역의 인도), 회사는 생산 실패 시점의 월말까지 환급액을 상환해야 한다. 일부 광업 상품은 생산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제한은 문제점으로 보인다.

## Withholding Tax (“WHT”)

광업 회사를 포함한 납세자는 배당,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세 의무가 있다.

인도네시아 회사에 대한 배당, 이자, 로열티 지급은 원천세율 15%가 적용된다. 그러나 배당의 경우, 이익 잉여금에서 지급되고 광산 회사의 지분을 인도네시아회사 주주가 최소 25%이상 소유 시, 동 배당은 원천세 적용이 면제된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원천세 2%가 적용된다.

만약 비거주자에게 지불될 경우, 현 원천세율은 20%이다. 서비스의 원천세 지불과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율(보통 10% 또는 15%)은 조세조약에 의해 경감될 수 있다. DGT는 Pre-Determined Disclosure Form과 조세조약 부당이용 방지 등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하였다(현행 한-인니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서비스 소득 0%, 배당 및 이자 10%, 로열티 15%임).

## Land & Building Tax (Pajak Bumi dan Bangunan, PBB)

DGT는 광물과 석탄의 광업지역 내 PBB 부과와 관련하여 규정 No.PER-47/PJ/2015(PER 47)을 발표하였다. PER 47은 PER-32/PJ/ 2012를 대체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광산업 부동산세는 광산 허가지역 및 실제 광업 활동이 수행되는 허가 외 지역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 모두 포함한다.

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a. 토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다음을 포함한 토지 지표면: (1) 국내 지역(생산지역, 비생산지역, 보상지역, 보안비역 등) 또한 (2) 국외지역
- 탐사 및 생산 단계에서 사용되는 토지 지표면

b. 광업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나 수면에 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물

부동산세율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세대상 판매가액의 0.5%이다. 과대상 판매가액은 부동산 판매가액의 일정비율로 규정되며, 최대 40%까지 적용된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대상 판매가액은 재무부를 대신하여 국세청(DGT)에서 결정하며, 해당지역의 경제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특히 채굴을 위해 사용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광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생산비용을 차감한 총소득)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판매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PER-32에서는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 **Tax Regime for a CoW/CCoW/CCA Company**

CoW/CCoW/CCA(Contract)의 중요한 점 중 한 가지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llex Specialis)이다. 예를 들어, Contract에 특정 조세 규정이 포함될 경우, 이 규정이 현행 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Contract에 포함된 조세 규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를 기점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Contract은 계약기간 동안 조세 규정을 확정시키며(2세대 Contract은 현행 세법 규정을 따름), Contract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세 문제는 현행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한다.

Contract에 특별 조세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의 이점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또는 적어도 계약 만료 시까지 조세와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Contract에 특별 조세 규정을 포함시킬 경우 소득세율 인하 또는 조세 인센티브 도입등과 같은 세법의 호의적인 변화에 대한 적용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은 특별 규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큰 규모의 광업 프로젝트에서 세금을 포함한 다양한 광업 운영 측면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호한다.

Contract에 포함된 광업 조세 체제는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일부 케이스는 Contract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여 광업 회사와 DGT간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신광업법 경과규정(Article 169)은 현행 Contract이 해당 Contract의 만료 시까지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과금 조항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신광업법을 준수하도록 1년 이내에 계약내용을 조정해야 하나, Contracts내에서 정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세금 및 정부 부과금 조항의 경우는 아직 불확실하다. Contract 조건 수정을 위해서 정부가 개별 Contract 회사의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나, Contract 전체가 수정되지 않고 사례별로 개별 수정되고 있다. 정부가 CoW/CCoW 회사들이 법인소득세율을 제외하고는 현행 세무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현재까지는 신광업법의 169조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중요한 발전은 3세대의 CCoW와 6/7세대의 CoW 회사에 대해 적용될 법인소득세에 대한 DGT의 공식 의견이다. 즉, 관련된 CoW 및 CCoW 회사들은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25%의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DGT는 circular No. 44/ PJ/2014 ("SE 44")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회사들이 30% 세율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모든 Contract 세대가 특정 세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현 세법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으며, 조세체계 적용에 대한 검토는 같은 세대의 2개 Contract에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Contract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 **Tax Registration**

Contract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납세번호 등록을 해야 하며, NPWP(납세자번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Contract 회사는 광산 운영 지역세무서에 세적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VAT와 원천세에 대한 의무를 포함한다.

## Bookkeeping in US Dollars

세법상, Contract회사는 장부 기장을 US Dollars 및 영어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사는 US Dollar 적용 회계연도 시작 최소 한달 전까지 US Dollar 기장을 DGT에 신고해야 한다.

통화와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회사는 법인세 납부를 Rupiah 또는 US Dollar로 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 인도네시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연간 법인세 신고서상 Rupiah 금액이 병기된 US Dollar로 표기되어야 한다.

## CIT

IUP/IUPK 회사와 비슷하게, Contract회사도 세무상 순이익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Contract 상 하단에 설명한 지출은 총수입으로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광물 CoWs는 특별법(lex specialis)인 소득세 규정이 있다. CCA/CCoW의 경우, 1세대와 대다수의 3세대 계약서에는 특별 법인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2세대와 그 외의 3세대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은 회사는 소득세 계산을 위한 현행 소득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CIT rate

Contract에 특정 소득세율이 표기된 경우, Contract 회사들은 2010년 이후 소득부터 인하된 법인세율 25%가 적용되지 않는다(세율이 2008년 적용되었던 30%에서 2010년 25%로 인하됨).

3세대 CCoW 및 6/7세대 CoW가 일반적으로 1994년 소득세(즉 최대 30%의 세율)와 관련된 특별법(lex specialis) 체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CCoW/CoW 회사에 적용될 법인세율에 대해 오랫동안 이견이 있다.

하지만 2014년 11월 24일에 DGT는 SE44를 통해 30% 세율이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DGT는 또한 25%의 세율을 적용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Operating Expenses

일반적으로 현행법이 적용된다.

## Exploration and Development Expenses

현지 탐사 경비는 일반적으로 Contracts 지역에서의 발생연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광산 개발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화되며, Contract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상각된다.

## Reclamation Reserve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일부 Contracts 세대는 복구충당부채(Reclamation Provision)의 손금산입을 위해 기존 법인세법 및 국유 은행 예치금 조항이 적용된다.

##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on Expenses

일반적으로 현행법이 적용된다.

## Asset Revaluation

일반적으로 현행법이 적용된다.

## Employee Benefits/Facilities

해당 Contract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제공된 복지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혜택을 받는다. Contract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비용은 대부분 공제 가능하지만, 직원이 복지비용을 직접 수령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Pre-Contract Expenses

Contract 회사의 주주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 및 광업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비교적 큰 규모의 지출을 한다.

Contract은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법인 설립 전 비용을 Contract 회사로의 이전을 허용한다. 법인설립 전 비용은 이연사전운영비용(deferred pre-operating costs)으로 인식되어, 생산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상각하여 법인세 계산시 공제될 수 있다.

대부분의 Contracts는 법인설립 전 비용을 개인회계사로부터 감사 받아야 하며, DGT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사항에 대해 법규상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인설립 전 비용이 Contract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VAT (Contract하에서 VAT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또는 원천세 의무와 같은 다수의 세무상 이슈가 존재한다.

## Deprecia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에 의해 공제가 가능하다. 세대별 contract에 따라 다른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되나, 대부분의 경우 가속상각률이 적용된다.

건물, 도로, 다리, 항만과 같은 광업 인프라 자산은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도로, 학교, 병원과 같은 공공인프라도 Contract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한 공제가 가능하다.

고정자산은 내용연수를 기초로 종류가 구분되어야 한다. 가속상각률(Accelerated Depreciation)은 Contract지역에 소재한 고정자산에 적용될 수 있다. CCoW/CCA 이전의 세대인 경우에는 보통 투자공제(Investment Allowance Deduction, 즉 Hypothetical Depreciation)를 규정하며, 자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상 고정 감가상각률을 적용한다.

특정 Contract에는 광구 수명이 자산의 내용연수보다 짧을 경우, 광구 수명이 만료된 시점에 자산의 나머지 장부가치를 전부 상각할 수 있다.

## Amortisation of Intangible Assets

무형자산은 사전운영비용, 특히, 소유권(Rights), 허가증(Licences) 등을 포함한다.

생산 이전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유효수명이 1년 이상이며, 일부 contract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생산 시작 후 자본화 및 상각할 수 있다. 이 비용들은 contract 회사 주주에 의해 발생된 법인설립 전 비용도 포함한다.

## Interest Expense

대다수의 CoW/CCoW는 특정 DER이 정해져 있으며, 특정 DER이 없는 경우에는 PMK 169를 따른다.

## Carried Forward Tax Losses

Contract상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현 세법상, 이월이 5년보다 적거나 혹은 많게 이월될 수 있으나, 소급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 Sales Tax

1984년 VAT법이 시행되기 전, 인도네시아는 매출세를 적용하였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출세는 여전히 1세대 CCA 기업에 적용된다. 매출세는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의 최대 5%가 부과되고 원천세와 유사하게 우선 자신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재무부 규정 No.194/PMK.03/2012는 1세대 CCA 계약자에게 해당 서비스에게 VAT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VAT

상기의 CCA 계약자를 제외하고는 CoW/CCoW 회사들은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 대하여 VAT가 부과된다. 일부 Contract의 경우 현 VAT 규정과 다른 VAT 체제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석탄 또는 Gold Bars가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매입 VAT가 공제/환급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수 있다.

제작 준비 단계 시, 회사는 광업 상품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매출 VAT는 없다. 따라서 회사가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 구매 시 하청업체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은 VAT 초과지급이 될 수 있다.

2004년 이전까지 광산 회사들은 그 당시 세법 규정에 의해 VAT Collector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광산 회사는 하청업체(Vendor)에 의해 청구된 VAT 지급(즉 매입VAT)을 하청업체에 하지 않고 재무부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일부 contract 회사들은 contract에 의해서 VAT Collector의 지위를 갖는다.

Contract상 세무 규정에 의해 회사는 지불한 매입 VAT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VAT는 Rupiah로 표시되며, 회사가 US Dollars로 기장할 경우 VAT 환급시에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 WHT

CoW/CCoW 회사는 배당,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세 의무가 있다. 원천세율은 contract에 명시된 세무 규정, 서비스 종류, 서비스 공급자의 거주 및 비거주에 의해 정해진다.

CoW/CCoW 회사들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무부 규정 MoF Regulation No. 39/PMK.011/2013은 CoW/CCoW 회사들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 현행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Land & Building Tax

CoW 및 CCoW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조세의무는 대개 Contract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

## Import of Capital Equipment

대부분의 Contract은 상업적 생산 시작 후부터 특정 기간 동안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VAT 및 소득세가 면제된다.

Contract에서 수입 조세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현행 일반법에 의해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 Non-Tax State Revenue

### Royalties

로열티는 CoW/CCoW의 contract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실제 생산량이나 판매 가격을 기반으로 분기마다 정부에 지급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 및 실무상 로열티는 선적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IUP/IUPK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로열티율은 섹션2에 기술되어 있다.

### Dead Rent

Contract 유효기간 동안 회사는 확정채굴료(Dead Rent)를 매년 납입해야 하며, 금액은 Contract/Licence에 명시된 지역 규모와 광업 운영 단계를 기반으로 계산된다(기초조사, 탐사, 개발단계마다 요율이 다름).

## Regional Tax

광산회사는 지방세와 벌과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관련 지방정부에 의해 세율이 1.5%부터 35%까지 결정된다. Contract 체결 시점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방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Transfer of Mineral Interests

### Purchase and Sale of Mining Interests

직접적인 contract 양도는 제한 받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하다. Contract의 양도는 여러 복잡한 세무 이슈들이 있으므로, 전체 또는 일부 소유권 이전은 contract 소유 회사들의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광산회사의 광산 지분 이전, 자금 조달 참여, 또는 자본 투자에 의한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정부는 광업 분야에서의 소득세 계산을 위한 별도의 정부규정(GR)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규정은 광산 지분 이전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지만, 광업 분야 소득세 계산을 위한 특정 정부규정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엄밀히 말하면, 양도인은 광산 지분 매각의 수익을 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무형자산 취득비용 공제 규정에 의해 취득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Contract 양도에 대한 일부 세금 이슈들은 명확하지 않다. 구매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비용 없이 유형자산(광산 인프라 장비)과 무형자산(이연탐사지출(Deferred Exploration Expenditure))의 양도가 이루어 지도록 세법이 규정되어야 하며, 매각 시에 일어나는 세무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 Purchase and Sale of Shares in an IUP/IUPK or Contract Company

이 방법은 인도네시아에서의 광업권 인수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지분의 매각은 과세대상이며, 매도자가 거주자일 경우 매각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도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조세조약에 의한 감면 또는 인도네시아 상장회사의 매각이 아닌 한, 양도차익의 5% 세금이 부과된다(이런 경우 0.1%로 최종분리과세됨).

현행 소득세법은 “광의의(Long-arm)” 자본이득 과세(Capital Gain Tax)에 대해서 규정한다.

과세당국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도관회사 또는 특수 목적 회사가 보유한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 또는 자회사의 지분 매각에 대하여 이를 인도네시아 내 회사의 주식 매각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매각대금의 5%를 최종부리과세로 과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 및 추가적인 사항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조세피난처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조세피난처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이 있는 지역의 거주자일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 Investment Structuring

일반적으로 세무효율적 투자구조(Tax Efficient Investment Structure)는 광산의 유효 수명 동안 대규모 절세효과를 내어 광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줄 것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광산업 투자 초기에는 면밀한 투자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구조 검토 시 알고 있어야 할 Contract 및 IUP/IUPK 관련 이슈는 다음과 같다.

- 회사는 단 하나의 Contract 또는 IUP/IUPK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 조항(Ring Fencing)은 연결납세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특성과 함께 신중한 Tax Planning을 요구하며, 특히 그룹 내에서의 광업 서비스 이용, 회사간 청구금액, 회사간 대출 등의 경우 면밀한 사전 검토를 요한다.
- 이익 송금 및 배당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무효율적 출자구조(Tax Efficient Shareholding Structure)는 프로젝트 실행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일부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의 원천세가 20%에서 15% 또는 10%로 감면될 수 있다).
- 조세조약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인도네시아 비상장 Contract 또는 IUP/IUPK회사의 지분 매각은 총 매각대금의 5%가 과세된다. 투자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 일부 Contract 경우, 외국 주주가 설립자일 경우 배당에 대한 원천세 감면이 가능하다.
- 세무효율적 프로젝트파이낸싱(Tax Efficient Project Financing) 전략 사용 또는 그룹 내부 파이낸싱의 경우 과소자본세제를 고려해야 하며, 사실상 인도네시아에서는 채무면제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다(탐사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
- 광물 처리 및 제련 사업을 위한 최선의 투자구조 및 준비



## 광업 투자 추가 규제 사항



## **Investment Law**

Law No.25 of 2007 (“Investment Law”)는 사업 허가를 One-Stop 서비스로 할 수 있도록 도입된 가장 최근 투자법이다. 투자법에 의하면, 투자조정청(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or “BKPM”)에게 투자 규정을 적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Investment Law No. 25에 의거 LLC (“PT”)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 인력의 우선사용
-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
- 기업의 사회책임 적용
- 환경 보전

투자자의 비재생자원의 채굴은 반드시 환경적 타당성(Environmental Feasibility)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현장 복구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Investment Law (기업사회책임부분 포함)를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사업 허가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법에 의해 국유화가 필수적이지 않은 이상, 중앙정부는 국유화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줄 수 있으며, 국유화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는 로열티, 배당금, 대출금 상환, 투자 및 관리체계 매각, 기술 서비스 수수료 등의 금액에 대하여 외화로 자유롭게 이체 및 본국에 송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2016년 2월 정부는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개정이 주요 내용인 Tenth Economy Package Policy를 발표하였다. 이 경제 정책 패키지에 따라 광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 조건에 일부 수정이 있다.

## **Forestry Law**

지리학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산림을 포함한 양질의 토양이 풍부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이용, 특히 산림보호구역은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된다. 광업 지역은 보통 산림 지역과 겹치기 때문에 산림규정에 의해 광업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999년 Law No. 41 (“Forestry Law”)의 개정령인 2004년 Law No.19는 광산회사가 산림법 도입 이전에 계약했을 경우 산림보호구역에서 노천광산을 13 개까지 허용하고 있다(Presidential Decree No.41/2004에 의해 규정됨).

GR No.24/2010 as amended by GR No.61/2012 and GR No.105/2015와 최근 2014년 3월 10일에 발행된 Minister of Forestry Regulation No.P16/Menhet-II/2014에 의하면, 산림청 (Ministry of Forestry)의 ‘Borrow-and-use’ 허가를 획득할 경우, 생산산림구역 및 보호산림구역 모두에서 비산림활동을 위한 산림 지역의 사용이 허용된다. “Borrow-and-use”허가는 양도되거나 다른 이를 위한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보호산림구역(Protected Forest)에서의 광산 활동은 몇 가지 조건하에 지하탄광만 가능하다(노천광산 제외). 생산산림구역(Production Forest)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하탄광 및 노천광산 활동 둘 다 허가된다. 보존산림구역(Conservation Forest)에서의 광업은 금지되어 있다.

산림지역을 광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배상이 필요로 하며, 토지배상 또는 금전적 배상으로 해야 한다. 일부 제한적인 기초조사 및 탐사활동(광산의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목적이 아닌 경우)은 배상의무가 없다. ‘Borrow-and-Use’ 허가 보유자는 비조세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토지의 사용이 중단되면 이와 동시에 조림에 착수해야 한다.

산림지역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산림청에서 승인한다. 그러나 주요지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WPN (Wilayah Pencadangan Negara, 국가전략을 위한 예비 사업 지역)에서의 채광작업을 위한 산림지역 이용은 의회로부터 최초 승인을 얻은 이후 산림청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다.

##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환경 보호 및 자원 보존과 자립적인 광산업 유지 사이에서의 균형은 어렵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환경 보호는 다양한 법, 규정 및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위반 시 벌금 및 처벌을 받으며 극단적인 경우 Licence 또는/혹은 Permit의 취소도 가능하다.

환경법은 LAW No. 32 OF 2009 (“Environmental Law”)로 개정되었다. 이 법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전략적 환경 분석을 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이 특정 지역의 발전과 융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광업법 및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 및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천연자원의 개발을 수행하는 광산 회사는 환경 영향 평가, 관리 및 감시 계획을 포함한 ‘환경 영향 계획 문서’(Environmental Impact Planning Document: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AMDAL)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AMDAL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환경 관리 준수 문서 (An Environmental Management Effort Document: Upaya Pengelolaan Lingkungan (UPL) and Upaya Pengawasan Lingkungan (UKL)가 준비되어야 한다.

환경법 위반은 3년에서 15년 구금 혹은 Rp 100 Million에서 Rp 750 Million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법은 또한 위반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최소한의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프로세스 적용과 생산비 증가로 인한 타임래그(Time Lag) 때문에 환경품질관리(배기ガス 및 폐수 온도 레벨)가 최근 산업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Energy Law***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관리 계획안을 구성하였다. Law No. 30 of 2007에 의하면, National Energy Council은 정부기관으로서 국가 에너지 규정을 계획 및 제작하고,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안을 결정하며, 에너지 위기 상황 시 절차를 결정하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규정 적용을 감시한다.

## ***Other Regulations Related to Mining Operations***

인도네시아 광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다른 관련 규정은 지하수 사용 규정, 고정자원으로부터의 공기 오염 통제 가이드라인, 수질 및 오염 규정, 폐유 규정 및 생산을 위한 화학품 저장 규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벌금 및 형벌을 받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Licence/Permit이 취소될 수 있다.

## Service Providers to the Mining Industry

광산회사는 일반적으로 탐사 및 평가, 개발, 운영, 폐광 및 복구와 같이 4개의 운영단계가 있다. PerMen24 규정 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는 외부업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 Exploratory Drilling and Sampling
- Infrastructure Construction
- Contract Mining and Overburden Removal
- Hauling and Barging

신광업법 및 PerMen 28/24 규정에 의거, 인도네시아 기업만이 광업 licence 보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4 종류의 광업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ploratory Drilling and Sampl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ntract Mining and Overburden Removal	Hauling and Barging
규정	Investment Law PR 39/2014  Mining Law PerMen 28 PerMen 24	Investment Law PR 39/2014  Mining Law PerMen 28 PerMen 24	Investment Law PR 39/2014  Mining Law PerMen 28 PerMen 24	Investment Law PR 39/2014  Mining Law PerMen 28 PerMen 24
투자 Licence 발행기관	BKPM	BKPM	BKPM	BKPM
비즈니스 Licence 발행기관	에너지 광물 자원부 (MoEM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nstruction Services Development Agency</li> <li>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에너지광물자원부</li> </ul>	에너지 광물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nister of Transportation</li> <li>MoEMR 또는 주지사 또는 시장(서비스 지역에 따라 다름)</li> </ul>
비즈니스 Licence 기간	3년(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없음 (투자조정청 승인)</li> <li>3년(연장 가능, 에너지광물자원부 승인)</li> </ul>	3년(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없음 (교통부 승인)</li> <li>3년(연장 가능, 에너지광물자원부 승인 조건)</li> </ul>
외국인 최대 소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유 및 가스 조사 서비스 (49%)</li> <li>지질 및 지구물리학적 조사 (49%)</li> <li>지열측량 (9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적으로 대규모의 기자재구매 서비스는 67%, 건설 도급업 및 컨설팅은 55%</li> <li>일부 건설의 경우 다른 조건이 적용됨 : 건설플랫폼의 경우 75%, 구형의 탱크와 해상 배관 설치의 경우 49%까지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육상 배관, 수직/수평 탱크건설은 국내투자만 가능</li> <li>소/중 규모 건설 도급업 및 컨설팅 (지역 소규모 회사만 해당)</li> <li>건설회사는 대표사무소 (Representing office)의 형태만 가능하며, 이 경우 로컬회사와 공동 영업(Joint Operation)으로 운영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nstruction 회사와 동일 조건</li> <li>소/중 규모 굴착, 땅 고르기, 광업을 위한 부지 준비 (지역 소규모 회사만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 호수 등에서의 수상 운송 시설 (49 %)</li> <li>특정 물품, 화물과 중장비 운송 (49%)</li> <li>터미널 지원 서비스 (49%)</li> <li>국내외 해상 운송 (49%)</li> <li>육상 운송 렌탈 (지역 투자만)</li> <li>최대 100%, 일반적인 광업 서비스 회사가 설립되었을 경우</li> </ul>
조세	현행법	현행법(최종 분리과세)	현행법	현행법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Contractors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지역 개발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법 Corporations Law No. 40/2007 Article 74에 의하면, 자원관련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PT 회사들은 CSR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회사의 지출 계획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CSR과 관련하여 정부의 추가 규정이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는 어떠한 정부규정도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 **Processing**

신광업법 하에서 광산 회사들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공정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Downstream Processing	
<b>규정</b>	Law 25/2007, PR 36/2010, Law No.4/2009, PerMen 1
<b>투자 licence 발행기관</b>	투자조정청(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비즈니스 licence 발행기관</b>	지역에 따라서 MoEMR/Governor/Mayor가 결정함
<b>최대 외국인 소유권</b>	100%
<b>조세</b>	현행법

## **Mining Infrastructure**

Greenfield 광업 프로젝트는 자본집약적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로 원격지에 위치해 있으며 급수/환적 설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광산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운송/진입 도로, 철도, 컨베이어, 발전소, 캠프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Washing & Crushing 시설, Ship Loader 등).

앞에서 언급된 인프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s a Separate Business**

	항구	도로	발전소	철도
<b>규정</b>	Law 17/2008, Law No. 25/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2010, Presidential Regulation No. 61/2009	Law 38/2004, GR 34/2006, GR 15/2005, GR No. 44/2009, GR No. 43/2013, Law No.25/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2010	Law 30/2009 GR 3/2005 GR 10/1989 GR 26/2006 GR 14/2012 Law 25/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39/2014	Law 23/2007 Government Regulation No. 56/2009 Law 25/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39/2014

	항구	도로	발전소	철도
투자 Licence 발행기관	BKPM  항만 비즈니스는 항만 관리 기관의 인가를 받은 회사가 수행할 수 있음	BKPM	BKPM	BKPM
비즈니스 Licence 발행기관	교통부 산하기관인 Port Authority에 의해 Port Operating Licence 승인  Sea Port Operating Licence는 다음의 기관이 발행한다. • Minister for Main Port and Hub Port • Governor or Mayor/ Regent for Feeder Port  Lake/River Port Operating Licence는 Mayor/ Regent가 발행	Minister of Public Works  정부의 면허 허가 승인	비즈니스/전력 발전소 위치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부, 주지사, 시장이 발행	철도 범위 구역에 따라 교통부, 주지사, 시장이 발행
비즈니스 Licence 기간	Port Authority의 면허 허가 승인에 표기된 기간	Ministry의 면허 허가 승인에 표기된 기간	30년	• Railways Infrastructure Operational Licence: Ministry, 주지사, 시장의 면허 승인 • Railways Facility Operational Licence 5년(연장 가능)
Licence 양도	No	Yes, 해당 처분의 승인 하에 가능함	규정 안됨	규정 안됨
외국인 최대 소유권	• 항구시설 (49%,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scheme)에 따른 허가기간 동안은 90%까지 가능) • 하역장 (49%, ASEAN 투자자의 경우 60%까지 가능) • 리셀션 시설 (49%) • 항구 비즈니스 (49%)	95%	• 전력공급의 개발 및 설치(95%) • 전기발전소 장비의 개발 및 설치(95%) • 장비 유지 및 운영 (95%) • 장비기술 개발 (100%) • 전력 컨설팅 (95%) • 원자력 발전소 (95%) • 송전 및 배전(95%, PPP시책의 경우 100%) • 1MW 이하의 발전소 (국내투자자만 허용) • 1~10MW의 발전소 (49%) • 10MW 이상 (95%, PPP시책의 경우 100%)	철도 운송은 명기되지 아니함 (100%)

	항구	도로	발전소	철도
토지 권리	Port Authority가 승인 Port Authority가 승인한 면허 내용을 기초로 비즈니스 수행	정부의 면허허가 승인	Hak Guna Bangunan (Right to Use Land for Erecting Building) 에 의해 법적 권리를 회사에 80년간 양도	정부의 면허허가 승인에 따라 다름
정부 수수료	면허허가 승인에 의해 규제	규정 없음	송전 및 배전 시설의 비과세 정부부담금	규정 없음
조세	현행법	현행법	현행법	현행법
기타 이슈	Law 17/2008은 GR에 의해 좀 더 명확한 시행규제가 적용될 것이라 약정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항만 운영관련 규정은 없음	유료로 비즈니스에서만 가능함	없음	없음

### As Part of Mining Business

	특수항만/ 터미널	도로	발전소	철도
규정	Law 17/2008 Law 4/2009 Presidential Regulation No. 61/2009	Law 38/2004 GR 34/2006 GR 8/1990 GR 40/2001 GR 15/2005 Law 4/2009	Law 30 /2009 GR 3/2005 GR10/1989 Law 4/2009	Law 23/2007 Government Regulation No. 56/2009 Law 4/2009
비즈니스 Licence 발행기관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gency내에 위치할 경우, 시장/Regent 가 발행</li> <li>주 내에서 Regency 가 2곳 이상일 경우, 주지사가 발행</li> <li>주가 2곳 이상일 경우, 에너지광물 자원부에서 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gency내에 송전일 경우, 시장/Regent 가 발행</li> <li>주 내에서 Regency 간의 송전일 경우, 주지사가 발행</li> <li>전국적인 송전일 경우 Ministry가 발행</li> </ul>	철도 범위 구역에 따라 Ministry, 주지사, 시장이 발행
비즈니스 Licence 기간	5년(연장 가능)	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 없음	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 없음	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 없음
토지 권리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가능
기타 이슈	최단거리에 있는 항구가 특수 항만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승인.	없음	없음	없음



## Appendices



Photo source : PT ANTAM (Persero) Tbk

## Appendix A. Minimum processing and refining requirements prior to export

No	Commodity		Minimum Limit			
	Ore	Mineral	Processing		Refining	
			Products	Quality	Products	Quality
1.	Copper (smelting process)	a. Chalcopyrite b. Borite c. Cuprite d. Covellite	Copper Concentrates	≥15% Cu	a. Copper Cathodes	Cu Metal ≥ 99% Cu
					b. Anode Slime	a. Metal Au ≥ 99%; b. Metal Ag ≥ 99%; c. Bullion Pb ≥ 90%; d. Metal Pd ≥ 99%; e. Metal Pt ≥ 99%; f. Metal Se ≥ 99%; g. Metal Te ≥ 99%; h. TeO <sub>2</sub> ≥ 98%; i. Te(OH) <sub>4</sub> ≥ 98%; j. PbO ≥ 98%; k. PbO <sub>2</sub> ≥ 98%; l. SeO <sub>2</sub> ≥ 98%; and/or m. Rare metals and rare soil (refer to the requirement for rare metal soil for tin).
					c. Telluride Copper	a. Cu Metal ≥ 99%; b. Metal Te ≥ 9%; c. TeO <sub>2</sub> ≥ 98%; d. Te (OH) <sub>4</sub> ≥ 98%; and/or e. Metal alloys telluride cooper > 20% Te
	Copper (leaching process)	a. Chalcopyrite b. Digenit c. Bornite d. Cuprite e. Covellite			Metal	a. Metal Cu ≥ 99%; b. Metal Au ≥ 99%; c. Metal Ag ≥ 99%; d. Metal Pd ≥ 99%; e. Metal Pt ≥ 99%; f. Metal Se ≥ 99%; g. Metal Te ≥ 99%; h. TeO <sub>22</sub> ≥ 98%; i. Te(OH) <sub>4</sub> ≥ 98%; and/or j. Rare metals and rare soil (refer to the requirement for rare metal soil for tin).

## Appendix A

No	Commodity		Minimum Limit			
	Ore	Mineral	Processing		Refining	
			Products	Quality	Products	Quality
2.	Nickel and/or cobalt (smelting process) a. Saprolite b. Limonite	a. Pentlandite b. Garnerite c. Serpentinite d. Karolite	-	-	Nickel Matte, Metal Alloys and Nickel Metal	a. Ni Mate $\geq$ 70% Ni; b. FeNi $\geq$ 10%Ni; c. Nickel Pig Iron (NPI) $\geq$ 4% Ni; d. Ni Metal $\geq$ 93%; and/or e. NiO $\geq$ 70% Ni.
	Nickel and/or cobalt (leaching process) Limonite				Metal, Metal Oxide, Metal Sulfide, mix hydroxide/sulfide precipitate, and hydroxide nickel carbonate	a. Metal Ni $\geq$ 93%; b. Mix Hydroxide precipitate (MHP) $\geq$ 25% Ni c. Mix sulphide precipitate (MSP) $\geq$ 45% Ni; d. Hydroxide Nickel Carbonate (HNC) $\geq$ 40% Ni; e. NiS $\geq$ 40% Ni; and/or f. Co Metal $\geq$ 93% g. CoS $\geq$ 40% Co; h. Metal Cr $\geq$ 99%; and/or i. Cr <sub>2</sub> O <sub>3</sub> $\geq$ 40%.
	Nickel and/or cobalt (reduction process) a. Saprolit b. Limonit				Metal Alloys	a. FeNispon (Sponge FeNi) $\geq$ 4% Ni; b. Luppen FeNi $\geq$ 4% Ni; and/or c. Nugget FeNi $\geq$ 4% Ni.
3.	Bauxite	a. Gibbsite b. Diaspora c. Boehmite	-	-	Metal Oxide/ Hydroxide and metal	a. Smelter grade alumina $\geq$ 98% Al <sub>2</sub> O <sub>3</sub> b. Chemical grade alumina $\geq$ 90% Al <sub>2</sub> O <sub>3</sub> Al(OH) <sub>3</sub> c. Alumina Hydrate $\geq$ 90% Al(OH) <sub>3</sub> d. Proppant: 1) Al <sub>2</sub> O <sub>3</sub> $\geq$ 70% (Granulated); 2) Able to rupture at a pressure 7.500psi, the size of fraction: -20+40 mesh $\leq$ 5,2% -30+50 mesh $\leq$ 2,5%; or -40+70 mesh $\leq$ 2,0%. 3) Apparent Specific Gravity (ASG) 3,15. And/or e. Metal Al $\geq$ 99%

No	Commodity		Minimum Limit			
	Ore	Mineral	Processing		Refining	
			Products	Quality	Products	Quality
4.	Iron ore	a. Hematite b. Magnetite	Iron concentrate <sup>*)</sup>	≥ 62% Fe and ≤ 1% TiO <sub>2</sub>	Sponge, metal and metal alloys	a. Sponge iron ≥ 75% Fe b. Pig iron ≥ 90% Fe; and/or c. Metal alloys (ferro alloy) ≥ 83% Fe
		Goethite/ laterite	Iron concentrate Laterite <sup>**)</sup>	> 51% Fe Rate (Al <sub>2</sub> O <sub>3</sub> + SiO <sub>2</sub> ) > 10%		
		Lamela magnetite-ilmenite (iron sand)	Iron sand concentrate <sup>***)</sup>	≥ 58% Fe; and 1% TiO <sub>2</sub> ≤ 25%	Metal	a. Sponge iron > 75% Fe; and/or b. Pig iron > 90% Fe.
			Pellet concentrate iron sand <sup>****)</sup>	≥ 56% Fe; and 1% TiO <sub>2</sub> ≤ 25%	Slag	a. TiO <sub>2</sub> ≥ 85%; b. TiCl <sub>4</sub> ≥ 98%; c. Metal titanium alloy ≥ 65% Ti; d. V <sub>2</sub> O <sub>5</sub> ≥ 90%; e. Metal vanadium alloy ≥ 65% V; and/or f. Rare metals and rare soil (refer to the requirement for rare metal soil for tin).
			Ilmenite concentrate <sup>*****)</sup>	≥ 50% TiO <sub>2</sub>	Oxide metals, chloride metals, and metal alloys	a. TiO <sub>2</sub> synthetic ≥ 85%; b. TiCl <sub>4</sub> ≥ 87%; and/or c. Mix titanium metals ≥ 65%.
					Slag	Refer to slag requirement at iron sand concentrate
5.	Tin	Cassiterite	-	-	Metal	Metal Sn ≥ 99.90%
					Slag	a. W ≥ 90% b. Ta <sub>2</sub> O <sub>5</sub> ≥ 90% c. Nb <sub>2</sub> O <sub>5</sub> ≥ 90% d. Sb <sub>2</sub> O <sub>5</sub> ≥ 90%
			Concentrate zircon	Refer to the requirements for zirconium and zircon.		Refer to the requirements for zirconium and zircon.
			Concentrate ilmenite	Refer to the requirements for ilmenite in iron sand		Refer to the requirements for ilmenite in iron sand
			Rutil concentrate	TiO <sub>2</sub> ≥ 90%	Chloride metals and metal alloys	a. TiCl <sub>4</sub> ≥ 98%; and/or b. Metal alloys of titanium ≥ 65% Ti.

No	Commodity		Minimum Limit			
	Ore	Mineral	Processing		Refining	
			Products	Quality	Products	Quality
			<i>Monasit</i> and <i>senotim</i> concentrate	-	Oxide metals, hydroxide metal, and metal rare soil	a. Oxide metals rare soil (REO) $\geq$ 99%; b. Hydroxide metals rare soil (REOH) $\geq$ 99%; and/or c. Rare metal soil $\geq$ 99%.
6.	Manganese	a. Pirolusit b. Psilomelan c. Braunit d. Manganit	Manganese concentrate	$\geq 49\%$ Mn	Metal, Metal alloys and Manganese Chemical	a. Ferro Manganese (FeMn), Mn $\geq$ 60% b. Silica Manganese (SiMn), Mn $\geq$ 60% c. Manganese Monoxide (MnO), Mn $\geq$ 47.5% MnO <sub>2</sub> $\leq$ 4%; d. Manganese Sulfide (MnSO <sub>4</sub> ) $\geq$ 90%; e. Manganese Chloride (MnCl <sub>2</sub> ) $\geq$ 90% f. Manganese Carbonate Synthetic (MnCO <sub>3</sub> ) $\geq$ 90%; g. Kalium Permanganat (KMnO <sub>4</sub> ) $\geq$ 90%; h. Manganese Oxide (Mn <sub>3</sub> O <sub>4</sub> ) $\geq$ 90%; i. Manganese Dioxide Synthetic (MnO <sub>2</sub> ) $\geq$ 98%; and/or j. Manganese Sponge (Direct Reduced Manganese) Mn $\geq$ 49%, MnO <sub>2</sub> $\leq$ 4%.
7.	Lead and Zinc	a. Galena b. Spalerite c. Smithsonite d. Hemimorphite (calamide)	Zinc Concentrate	$\geq 52\%$ Zn	Metal, Metal oxide/ hydroxide	a. Bullion $\geq$ 90% Zn; b. ZnO $\geq$ 98%; c. ZnO <sub>2</sub> $\geq$ 98%; and/or d. Zn (OH) <sub>2</sub> $\geq$ 98%.
					Gold metal and/or silver	a. Metal Au $\geq$ 99%; b. Metal Ag $\geq$ 99%.
			Lead Concentrate	$\geq 57\%$ Pb	Metal, metal oxide/ hydroxide	a. Bullion > 90% Zn; b. PbO $\geq$ 98%; c. Pb(OH) <sub>2</sub> $\geq$ 98%; and/or d. PbO <sub>2</sub> $\geq$ 98%;
					Gold metal and/or silver	a. Metal Au $\geq$ 99%; b. Metal Ag $\geq$ 99%.

No	Commodity		Minimum Limit			
	Ore	Mineral	Processing		Refining	
			Products	Quality	Products	Quality
8.	Gold	a. Native b. Associated minerals			Precious metal	Metal Au ≥ 99%
9.	Silver	a. Native b. Associated minerals			Precious metal	Metal Ag ≥ 99%
10.	Chromium	Chromite			Metal and alloys	a. Metal Cr ≥ 99% b. Metal Alloys of chromium ≥ 60% Cr
11.	Zirconium				Material of zircon chemical, sponge zircon, zirconia, metal zircon, and hafnium	a. Zirconium Oxychlorida (ZOC) $\text{ZrOCl}_2 \cdot 8\text{H}_2\text{O} \geq 90\%$ ; b. Zirconium sulfate (ZOS) $\text{Zr}(\text{SO}_4)_2 \cdot 4\text{H}_2\text{O} \geq 90\%$ ; c. Zirconium Sulfate Based (ZBS) $\text{ZrO}_8(\text{SO}_4)_2 \cdot x\text{H}_2\text{O} \geq 90\%$ ; d. Zirconium Carbonate Based (ZBC) $\text{ZrCO}_3 \cdot x\text{H}_2\text{O} \geq 90\%$ ; e. Ammonium Zirconium Carbonate (AZC) $(\text{NH}_4)_2\text{ZrOH}(\text{CO}_3)_3 \cdot 2\text{H}_2\text{O} \geq 90\%$ ; f. Zirconium Acetate (ZAC) $\text{H}_2\text{ZrO}_2(\text{C}_2\text{H}_3\text{O}_2)_2 \geq 90\%$ ; g. Potassium Heksafloro Zirconate (KFZ) $\text{K}_2\text{ZrF}_6 \geq 90\%$ ; h. Zirconium Sponge ≥ 85%; i. Zirkonia ( $\text{ZrO}_2 + \text{HfO}_2$ ) ≥ 99%; j. Zirconium ≥ 95% ZR; and/or k. Hafnium ≥ 95% Hf.
					Ilmenite	Refer to the requirements for ilmenite in iron sand
					Rutil	Refer to the requirements for rutil concentrate in tin
12	Antimony	Stibnit			Metal antimony	a. SB ≥ 99%; and/or b. $\text{Sb}_2\text{O}_5 \geq 95\%$ .

### Remarks:

\*) This represents iron concentrates which contains hematite/magnetite mineral with iron component of Fe  $\geq$  62%.

\*\*) This represents iron concentrates which contains goethite/laterite mineral with iron component of Fe  $\geq$  51% and alumina ( $\text{Al}_2\text{O}_3$ ) and silica ( $\text{SiO}_2$ ) components of  $\geq$  10%.

\*\*\*) This represents iron concentrates which contains lamella magnetite-ilmenite mineral with iron component of Fe  $\geq$  58% and compound concentration Titanium oxide of  $1\% \leq \text{TiO}_2 \leq 25\%$ .

\*\*\*\*) This represents iron concentrates in the form of pellet which contains lamella magnetite-ilmenite mineral with iron component of Fe  $\geq$  56% and compound concentration Titanium oxide of  $1\% \leq \text{TiO}_2 \leq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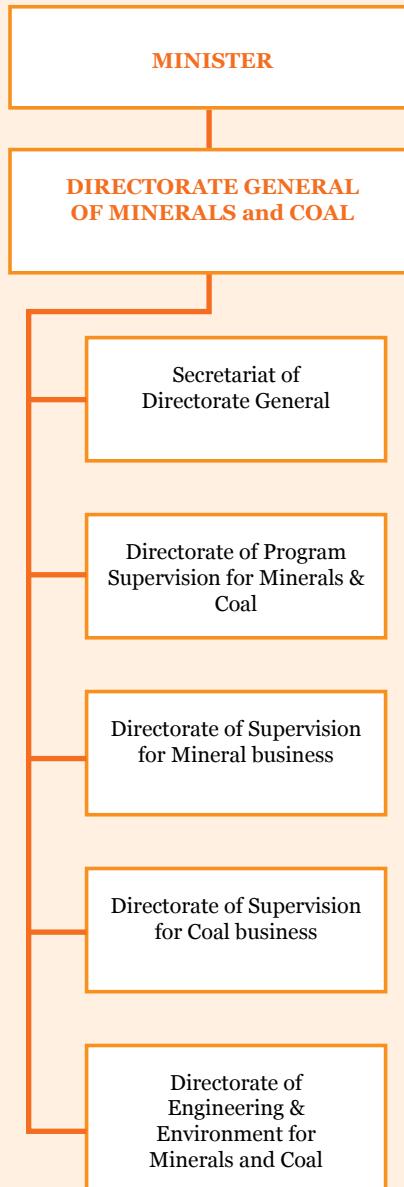
\*\*\*\*\*) This represents iron concentrates which contains lamella magnetite-ilmenite mineral with compound concentration Titanium oxide of  $\text{TiO}_2 \geq 50\%$ .

## Appendix B. 지방세

하단의 테이블은 광산업 관련 다양한 종류의 지방세에 대한 내용이다.

지방세 종류	최대 관세	현 관세	산출 방식
<b>A. 주세 (Provincial Taxes)</b>			
1. 자동차 및 중장비 세금	10%	개인 차량	
		첫 번째 차량 소유 시 1%-2%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차량 소유 시 2% - 10%	
		0.5% - 1% - Public 차량	
		중장비 차량 0.1% - 0.2%	
2. 자동차 명의변경 요금 (Above-water Vessels and Heavy Equipment)	20%	자동차	
		20% - 첫 번째 명의변경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명의변경 시 1%	
		중장비	
		0.75% - 첫 번째 명의변경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명의변경 시 0.075%	
3.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	10%	Public 차량: 개인차량 연료에 대한 세금보다 최소 50% 낮음 (지역에 따라 다름)	연료 판매 가격(휘발유, 디젤, LPG)
4. 지하수 및 지표수 사용에 대한 세금	10%	지표수에만 관세 적용	수도의 구입가격(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결정됨)
<b>B. 지방세(Regency and Municipal Taxes)</b>			
5. 가로등에 대한 세금	10%	산업 사용 3%	전기료
		개인 사용 1.5%	
6. 비금속 및 암석에 대한 세금 (Formerly C-Category Mined Substance Collection)	25%	지역적으로 다름	
7. 지하수 세금	20%	지역적으로 다름	구입가
8. 부동산세	0.3%	지역적으로 다름	특정 종류의 토지 및 건물에만 해당
9. 토지 및 건물 권리 취득세	5%	지역적으로 다름	토지 및 건물 매매가

## Appendix C. 에너지광물자원부



## Appendix D. 산업 연합



### 인도네시아 광업 협회 (Indonesian Mining Association, IMA)

인도네시아 광업협회는 비정부, 비정치적, 비영리 국가 광업기구로서,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라 1975년 5월 29일 설립되었으며, 협회 본부 및 사무실은 자카르타에 소재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들을 위한 광업 관련 강연 및 세미나를 열고, 인도네시아 광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주최하며, 광업관련 정보 발행물을 발간하며, 국내외 인도네시아 광산업을 대표하는 등, 정부와 광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IMA는 Asean Federation of Mining Associations (AFMA)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 IMA의 목적

협회의 목적 및 목표는 광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통해 탐사, 광업, Beneficiation and Metallurgical 측면에 대한 비전매 특허(Non-proprietary) 및 Non-Confidential 정보를 전파한다.

1. 국가수준에서 광산업과 관련된 문제 및 이에 대한 솔루션 연구
2. 광산업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적용 가능한 현대적 방법 연구
3. 회원사간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협회는 구성원이 당사자로 있는 contracts에 어떠한 결정이나 영향을 미칠 수 없음)
4. 광산업의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추진
5. 협회의 구성원 간의 과학적 연구 분위기 조성
6. 해외 유사한 전문 기관과의 접촉과 협력을 구축
7. 광산업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의 보급과 분석
8. 협회 회원들의 높은 수준의 전문가적 행위 유지
9. 인도네시아 광산업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추진
10. 광산 업계의 발전과 현안에 대해 일반대중 및 교육기관 공유
11. 광산 업계에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에 대한 지원



ASOSIASI PERTAMBANGAN  
**BATUBARA** INDONESIA  
INDONESIAN COAL  
MINING ASSOCIATION

**인도네시아 석탄 산업 협회 (Indonesian Coal Mining Association, ICMA)**

인도네시아 석탄산업협회(ICMA)는 인도네시아 내 석탄산업 분야 기업을 위해 1989년 9월 20일에 설립된 단체이다.

APBI-ICMA는 비정부, 비영리, 비정치적 조식으로 인도네시아 내 석탄산업분야에서의 선행부문(탐사 및 개발)과 후속 부문(마케팅과 유통, 이용과 광산 서비스) 모두를 포용하는 조직이다.

협회는 석탄 산업에서의 공동의 목표를 향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동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PBI-ICMA는 또한 관련 정부 기구의 파트너로서 투자와 경쟁에서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산업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PBI-ICMA는 석탄 산업에서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정부와 투자자, 관련 단체, 노동자와 고객 등 관련 단체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 Appendix E. Summary of Mineral CoW generations

No	Item	Third Generation	Fourth Generation	Fifth Generation	Sixth Generation	Seventh Generation	Remarks
1	<b>Deadrent – in US\$ per hectare per annum except stated otherwise</b>						
	a. General Survey	0.01 - 0.03	0.025 - 0.05	0.025 - 0.05	0.025 - 0.05	0.025 - 0.05	
	b. Exploration	0.08 - 0.2	0.1 - 0.35	0.1 - 0.35	0.1 - 0.35	0.1 - 0.35	
	c. Feasibility	0.2	0.5	0.5	0.5	0.5	
	d. Construction	0.2	0.5	0.5	0.5	0.5	
	e. Operation	1.00 - 2.00	1.50 - 3.00	1.50 - 3.00	1.50 - 3.00	1.50 - 3.00	
2	<b>Production royalty rate (%)</b>	Annex E	Annex F	Annex F	Annex F	Annex F	Annex F of the CoW usually provides details of the royalty rates.
3	<b>CIT</b>						
	<b>a. Tax Rates</b>	Follows the prevailing laws, but not higher than: - 35% for the first five years of Operating Period; - 40% for the second five years of Operating Period; - 45% thereafter.	Maximum 35%	Maximum 35%	Incremental CIT rate to 30% (or lower rate subject to a GR)	Incremental CIT rate to 30% (or lower rate subject to a GR)	
	<b>b. Depreciation rates</b> <i>Non-building assets:</i>						
	i. Straight line	12.5%	Not Applicable	Group 1 & 2 follows ITL 1984 Group 3: 12.5%	10% -50% (for tangible assets located in the Contract Area); otherwise 5%-25%	10% -50% (for tangible assets located in the Contract Area); otherwise 5%-25%	For the fifth generation, the tax depreciation rates only apply to tangible assets located in the Contract Area. Otherwise, provision under the 1984 Income Tax Law should prevail.
	ii. Declining balance	Not Applicable	25%	Group 1 & 2 follows ITL 1984	20% - 100% (for tangible assets located in the Contract Area); otherwise 10%-50%	20% - 100% (for tangible assets located in the Contract Area); otherwise 10%-50%	
	<i>Building assets:</i>						
	i. Straight line	12.50%	25%	12.50%	10% -20% (for tangible assets located in the Contract Area); otherwise 5%-10%	10% -20% (for tangible assets located in the Contract Area); otherwise 5%-10%	
	ii. Declining balanc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b>c. Amortisation rates</b>						
	a. Straight line	12.5%	Not Applicable	25.0%	10% -50%	10% -50%	Under most CoWs, costs incurred prior to commercial operation may be deferred and amortised
	b. Declining balance	Not Applicable	25%	Not Applicable	20% - 100%	20% - 100%	

No	Item	Third Generation	Fourth Generation	Fifth Generation	Sixth Generation	Seventh Generation	Remarks
	<b>d. Accelerated Depreciation</b>						
	Non-building assets:	25%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For the third generation, accelerated depreciation can only be claimed within any one of the first four years of the life of the assets
	Building assets:	10%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b>e. Investment allowance</b>	20% of total investment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At the rate of 5% a year
	<b>f. Deductible expenses:</b>						
	<i>Operating Expenses:</i>						
i.	Cost of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utilities	✓	✓	✓	✓	✓	
ii.	Expenses for contracted services	✓	✓	✓	✓	✓	
iii.	Premiums for insurance	✓	✓	✓	✓	✓	
iv.	Damage/losses not compensate for insurance	✓	✓	✓	✓	✓	
v.	Payments of royalties or other payments in respect of patent, design, technical information and services	✓	✓	✓	✓	✓	Third Generation - payment to affiliates is subject to approval from the DGT
vi.	Losses from obsolescence or destruction of inventory	✓	✓	✓	✓	✓	
vii.	Rentals	✓	✓	✓	✓	✓	
viii.	Deadrent, surface rent, production royalties, stamp duty, and other levies	✓	✓	✓	✓	✓	
ix.	Sales tax	✓	Silent	Silent	Silent	Silent	
x.	Uncredited VAT	Silent	✓	✓	✓	✓	
xi.	Expenses for treating, processing, repairs and maintenance, handling, storing, transporting and shipping	✓	✓	✓	✓	✓	
xii.	Expenses for commissions and discounts	✓	✓	✓	✓	✓	
xiii.	Expenses for environment	Silent	Silent	Silent	✓	✓	
xiv.	Expenses incurred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and expended by a shareholder	✓	✓	✓	✓	✓	It is deductible provided the expenditures have been audited by independent auditor and approval from the DGT has been obtained.

No	Item	Third Generation	Fourth Generation	Fifth Generation	Sixth Generation	Seventh Generation	Remarks
	<u>Sales, General &amp; Administration</u>						
i.	Salaries and wages	✓	✓	✓	✓	✓	
ii.	Costs of specified BIKs in the contract area	✓	✓	✓	✓	✓	
iii.	Research expenses	✓	✓	✓	✓	✓	
iv.	Travel expenses	✓	✓	✓	✓	✓	Only for business purposes
v.	Technical fees	✓	✓	✓	✓	✓	
vi.	Management fees and other fees for services performed abroad	✓	✓	✓	✓	✓	
vii.	Communication and office expenses	✓	✓	✓	✓	✓	
viii.	Dues and subscriptions	✓	✓	✓	✓	✓	
ix.	Advertising and other selling expenses, public relations, marketing expenses	✓	✓	✓	✓	✓	
x.	Legal and auditing expenses	✓	✓	✓	✓	✓	
xi.	General overhead expenses	✓	✓	✓	✓		
xii.	Exploration costs	✓	✓	✓	✓	✓	
xiii.	Other relevant expenses	✓	✓	✓	✓	✓	
xiv.	Reserve for reclamation	Silent	Silent	Silent	✓	✓	Subject to a deposit placed in a State Owned bank, audited by a public accountant and approved by the DGT
	<b>g. Interest deductibility</b>						
	Maximum debt to equity ratio	1.5 to 1	3 to 1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Maximum debt to equity ratio for Investment <=US\$200m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5 to 1	5 to 1	5 to 1	
	Maximum debt to equity ratio for Investment >US\$200m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8 to 1	8 to 1	8 to 1	
	<b>h. Tax losses carried forward</b>	Four years (loss before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Operating period can be utilised in any years)	Eight years	Five to eight years	Eight years	Eight years	
4	<b>WHT rates</b>						
i.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10%	15% for domestic tax payer; 20% for foreign tax payer	15% for domestic tax payer; 20% for foreign tax payer	15% for domestic tax payer; 20% for foreign tax payer	15% for domestic tax payer; 20% for foreign tax payer	Please note that the WHT rates under CoWs may be irrelevant based on PMK-39
ii.	Dividends (founder shareholder)	See above	See above	See above	7.5%	7.5%	

No	Item	Third Generation	Fourth Generation	Fifth Generation	Sixth Generation	Seventh Generation	Remarks
	iii. Technical, management fees and others	Prevailing law	2% to 20%	9% for domestic tax payer; 20% for foreign tax payer	15% of deemed net income/20%	15% of deemed net income/20%	
	iv. Rentals	Prevailing law	15% for domestic tax payer; 20% for foreign tax payer	15% for domestic tax payer; 20% for foreign tax payer	15% of deemed net income/20%	15% of deemed net income/20%	
	v. Employee income tax	Applicable	Applicable	Applicable	Applicable	Applicable	Follows the prevailing tax laws and regulations
5	<b>VAT rates</b>						
	i. VAT on sales	Silent	10% on domestic sales; 0% on export sales	10% on domestic sales; 0% on export sales	10% on domestic sales; 0% on export sales	10% on domestic sales; 0% on export sales	The fifth generation VAT obligations are grandfathered to the 1984 VAT Law
	ii. VAT on domestic purchases	Silent	10% paid to vendor	10% collected by the mining company	10% collected by the mining company	10% collected by the mining company	The sixth and seventh generations VAT obligations are grandfathered to the 1994 VAT Law
	iii. VAT on import	Silent	Deferred up to the 10th anniversary of Operating Period	Deferred up to the 10th anniversary of Operating Period <sup>*)</sup>	Could be exem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regulations	Could be exem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regulations	
	iv. VAT on offshore services	Silent	10% on self assessment basis	10% on self assessment basis	10% on self assessment basis	10% on self assessment basis	
6	<b>Sales Tax rates</b>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Sales tax was repealed in 1984, when VAT was introduced
7	<b>Import of capital goods:</b> a. Import Duty	a. Exempted up to the 10 <sup>th</sup> anniversary of commercial production;	a. Exempted/reduced rates up to the 10 <sup>th</sup> anniversary of Operating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regulations;	a. Exempted/reduced rates up to the 10 <sup>th</sup> anniversary of Operating Period <sup>*)</sup> ,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regulations;	a. Exempted/reduced rates up to the 10 <sup>th</sup> anniversary of Operating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regulations;	a. Exempted/reduced rates up to the 10 <sup>th</sup> anniversary of Operating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regulations;	Exemption of import duty is subject to either CoW or BKPM Master List approval
	b. Article 22 Income Tax	b. Silent	b. Silent	b. Silent	b. Could be exem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regulations	b. Could be exem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regulations	
8	<b>Other taxes &amp; levies</b>						
	a. Regional taxes (e.g. motor vehicle and street lighting levy)	- Regional charges - Regional Development Tax (“IPEDA”): amount equal to deadrent and an amount based on non-public area	Applicable	Applicable	Applicable	Applicable	Generally capped at the rate not exceeding the rate prevailing at the CoW signing date
	b. Land and building tax	Silent	Applicable	Applicable	Applicable	Applicable	
	c. Stamp duty	1/1000 of the total loan	Applicable	Applicable	Applicable	Applicable	

Note:

<sup>\*)</sup> could be different under several CoW

## Glossary

Term	Definition
BKPM	<i>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i> (Indonesia's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CCA	Coal Co-operation Agreement
CIT	Corporate Income Tax
CoW	Contract of Work
CCoW	Coal Contract of Work
Contracts	CoW/CCoW/CCA
DGFT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
DGoMC	Director General of Minerals and Coal
DGT	Director General of Taxation
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
ET	<i>Eksportir Terdaftar</i> (Listed of Exporter)
FOB	Free On Board
Government	Government of Indonesia
GR	Government Regulation
ha	Hectare
IDX	Indonesia Stock Exchange
Investment Law	Law No. 25/2007
IPR	<i>Izin Pertambangan Rakyat</i> (People's Mining Licence)
ITL	Law No. 36/2008 (the prevailing Income Tax Law)
IUJP	<i>Izin Usaha Jasa Pertambangan</i> (Mining Services Business Licence)
IUP	<i>Izin Usaha Pertambangan</i> (Mining Business Licence)
IUPK	<i>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i>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ce)
IUP-OP	<i>Izin Usaha Pertambangan Operasi Produksi</i> (Operation Production Mining Business Licence)
KP	<i>Kuasa Pertambangan</i> (Mining Right)
L/C	Letter of Credit
Minister	Minister of the MoEMR
Mining Law	Law on Mineral and Coal Mining No.4 of 2009
MoEMR	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MoF	Minister of Finance

Term	Definition
MoT	Ministry of Trade
NPWP	<i>Nomor Pokok Wajib Pajak</i> (Tax Payer Identification Number)
PBB	<i>Pajak Bumi dan Bangunan</i> (Land & Building Tax)
PerMen	MoEMR Regulation
PerMenDag	<i>Peraturan Menteri Perdagangan</i> (MoT Regulation)
PMA	<i>Penanaman Modal Asing</i> (Foreign Investment Company)
PMDN	<i>Penanaman Modal Dalam Negeri</i> (Domestic Investment Company)
PMK	<i>Peraturan Menteri Keuangan</i> (MoF Regulation)
PT	<i>Perseroan Terbatas</i> (Limited Liability Company)
PTBA	PT Bukit Asam (Persero) Tbk
PwC	PwC refers to the network of member firms of 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VAT	Value Added Tax
WIUP	<i>Wilayah Izin Usaha Pertambangan</i> (Mining Business Licence Area)
WIUPK	<i>Wilayah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i> (Specific Mining Business Licence Area)
WHT	Withholding Tax
WP	<i>Wilayah Pertambangan</i> (Mining Area)
WPN	<i>Wilayah Pencadangan Negara</i> (State Reserve Area)
WPR	<i>Wilayah Pertambangan Rakyat</i> (People's Mining Area)
WUP	<i>Wilayah Usaha Pertambangan</i> (Commercial Mining Business Area)

## About PwC

The firms of the PwC global network ([www.pwc.com](http://www.pwc.com)) provide Industry-focused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for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More than 208,000 people in 157 countries connect their thinking, experience and solutions to build trust and enhance value for clients and their stakeholders.

PwC is organised into four Lines of Services, each staffed by highly qualified experienced professionals who are leaders in their fields. The lines of service are:

- **Assurance Services** provide assurance over any system, process or controls and over any set of information to the highest PwC quality.
  - Risk Assurance
  - Financial Audit
  - Capital Market Services
  - Accounting Advisory Services
- **Tax Services** optimise tax efficiency and contribute to overall corporate strategy through the formulation of effective tax strategies and innovative tax planning. Some of our value-driven tax services include:
  - Corporate tax
  - International tax
  - Transfer pricing (TP)
  - Mergers and acquisitions (M&A)
  - VAT
  - Tax disputes
  - International assignments
  - Customs; and
  - Investment and corporate services

• **Advisory services** implement an integrated suite of solutions covering deals and transaction support and performance improvement.

- Business Recovery Services
- Capital Projects & Infrastructure
- Corporate Finance
- Corporate Value Advisory
- Deal Strategy
- Delivering Deal Value
- Transaction Services

• **Consulting Services** help organisation to work smarter and grow faster. We consult with our clients to build effective organisation, innovate & grow, reduce costs, manage risk & regulations and leverage talent. Our aim is to support you in designing, managing and executing lasting beneficial change.

- Management Consulting
- Risk Consulting
- Technology Consulting
- Strategy Consulting



Photo source : PwC

For companies operating in the Indonesian mining sector, there are some compelling reasons to choose PwC Indonesia as your professional services firm:

- The PwC network is the leading adviser to the mining industry, both globally and in Indonesia, working with more explorers, producers and related service providers than any other professional services firm. We have operated in Indonesia since 1971 and have over 1,700 professional staff, including 53 Indonesian national partners and expatriate technical advisors, trained in providing assurance, advisory and tax services to Indonesian and international companies.
- Our Energy, Utilities and Mining (EU&M) practice in Indonesia comprises over 300 dedicated professionals across our four Lines of Service. This body of professionals brings deep local industry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international mining expertise and provides us with the largest group of industry specialists in the Indonesian professional market. We also draw on the PwC global EU&M network which includes more than 12,000 people focused on serving energy, power and mining clients.
- Our commitment to the mining industry is unmatched and demonstrated by our active participation in industry associations around the world and our thought leadership on the issues affecting the industry. Through our involvement with the Indonesian Mining Association, Indonesian Coal Mining Association and Indonesian mining companies, we help shape the future of the industry.
- Our client service approach involves learning about your organisation's issues and seeking ways to add value to every task we perform. Detailed mining knowledge and experience ensures that we have the background and understanding of industry issues and can provide sharper, more sophisticated solutions that help clients accomplish their strategic objectives.

# PwC Mining Contacts

## Assurance



**Sacha Winzenried**  
sacha.winzenried@id.pwc.com  
T: +62 21 528 90968



**Haryanto Sahari**  
haryanto.sahari@id.pwc.com  
T: +62 21 528 91000



**Yusron Fauzan**  
yusron.fauzan@id.pwc.com  
T: +62 21 528 91072



**Gopinath Menon**  
gopinath.menon@id.pwc.com  
T: +62 21 528 90772



**Yanto Kamarudin**  
yanto.kamarudin@id.pwc.com  
T: +62 21 528 91053



**Daniel Kohar**  
daniel.kohar@id.pwc.com  
T: +62 21 528 90962



**Firman Sababalat**  
firman.sababalat@id.pwc.com  
T: +62 21 528 90785



**Dodi Putra**  
putra.dodi@id.pwc.com  
T: +62 21 528 90347



**Toto Harsono**  
toto.harsono@id.pwc.com  
T: +62 21 528 91205



**Heryanto Wong**  
heryanto.wong@id.pwc.com  
T: +62 21 528 91030



**Dedy Lesmana**  
dedy.lesmana@id.pwc.com  
T: +62 21 528 91337

## Tax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T: +62 21 528 90370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T: +62 21 528 91004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T: +62 21 528 90972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  
T: +62 21 528 90375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T: +62 21 528 90765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T: +62 21 528 90520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T: +62 21 528 90618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  
T: +62 21 528 90328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  
T: +62 21 528 90329

## Advisory



**Mirza Diran**  
mirza.diran@id.pwc.com  
T: +62 21 528 90950



**Joshua Wahyudi**  
joshua.r.wahyudi@id.pwc.com  
T: +62 21 528 90833



**Michael Goenawan**  
michael.goenawan@id.pwc.com  
T: +62 21 528 90340



**Hafidsyah Mochtar**  
hafidsyah.mochtar@id.pwc.com  
T: +62 21 528 90774



**Agung Wiryawan**  
agung.wiryawan@id.pwc.com  
T: +62 21 528 90666

## Consulting



**Lenita Tobing**  
lenita.tobing@id.pwc.com  
T: +62 21 528 90608



**Paul van der Aa**  
paul.vanderaa@id.pwc.com  
T: +62 21 528 91091

## **Korea Business Desk Contacts**



**Lok Budianto**  
Korea Desk Leader, Assurance  
[lok.budianto@id.pwc.com](mailto:lok.budianto@id.pwc.com)  
T: +62 21 528 90610



**Taehun Jung**  
Technical Advisor  
[taehun.jung@id.pwc.com](mailto:taehun.jung@id.pwc.com)  
T: +62 21 528 90449  
M: +62 811 989 1403



**Ali Widodo**  
Partner - Tax  
[ali.widodo@id.pwc.com](mailto:ali.widodo@id.pwc.com)  
T: +62 21 528 90623



**Seungchan Park**  
Technical Advisor  
[park.seungchan@id.pwc.com](mailto:park.seungchan@id.pwc.com)  
T: +62 21 528 91106

# Acknowledgements

We would like to convey our sincere thanks to all the contributors for their efforts in supporting the preparation of this publication.

## Photographic contributions

We gratefully acknowledge and thank the following companies that provided photographs for inclusion in this publication (in alphabetical order):

- PT Agincourt Resources
- PT ANTAM (Persero) Tbk
- PT Bukit Asam (Persero) Tbk
- PT Jembayan Muarabara

## Project Team

Sacha Winzenried, Suyanti Halim - Project Leaders

Verita Jau - Project Manager

Tim Watson

Adi Pratikto

Hafidsyah Mochtar

Narindra Krisnamukti

Fajri Satria Wika

Hendra

Mierna Febriarti

Kertawira Dhany

Jeremiah Pranajaya

Dina Cahyadi

Heru Purnomo

## PwC Indonesia ([www.pwc.com/id](http://www.pwc.com/id))

Plaza 89

Jl. H.R. Rasuna Said Kav. X-7 No.6

Jakarta 12940 - INDONESIA

P.O. Box 2473 JKP 10001

Telp: +62 21 5212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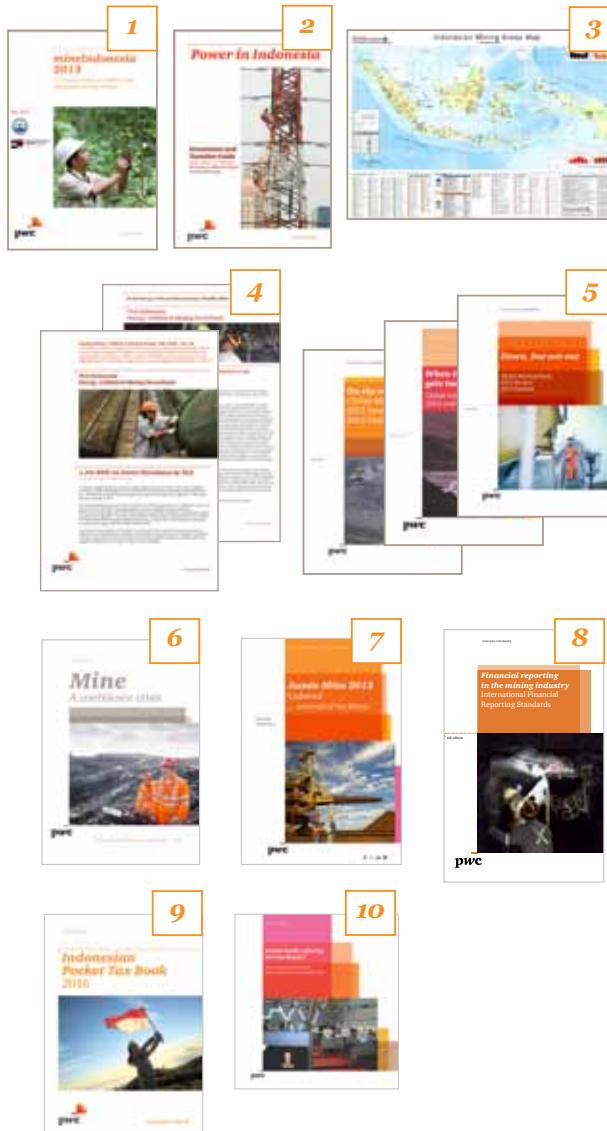
Fax: +62 21 5290 5555/5290 5050

# Other PwC Mining Publications

## More insights

Visit [www.pwc.com/id/eum-publications](http://www.pwc.com/id/eum-publications) to download or order hardcopies of reports

1. mineIndonesia - survey of trends in the Indonesian mining sector
2. Power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3. Indonesian Mining Areas Map
4. Energy, Utilities and Mining Newsflash
5. Global Mining Deals
6. Mine - review of the global mining sector
7. Aussie mine - review of the Australian mining sector
8. Financial Reporting in the Mining Industry
9. Indonesian Pocket Tax Book
10. Initial Public Offering - Are You Ready?



인도네시아 광업 투자 및 법령 가이드  
2017년 2월 22일 발행  
발행인 :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 PwC Indonesia  
발행처 : PwC Indonesia  
기획 : 송요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상무관  
원고 : 정태훈 / 남승수 / 김홍현



**pwc**

Cover picture courtesy of: PT ANTAM (Persero) Tbk

PwC Indonesia is comprised of KAP Tanudiredja, Wibisana, Rintis & Rekan, PT Prima Wahana Caraka, PT PricewaterhouseCoopers Indonesia Advisory and PT 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Indonesia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and all of which together constitute the Indonesian member firm of the PwC global network, which is collectively referred to as PwC Indonesia.

© 2017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